

2018년 군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2018. 2.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Jeollabuk-do Gunsan Office of Education

전체목차

1 군산특수교육계획



2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3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4 부록



목 차

I. 군산 특수교육 계획의 기저	1
II. 군산 특수교육 현황	5
III. 2018년도 중점과제 추진계획	6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6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6
1-2.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7
1-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의 내실화	10
1-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12
1-5. 장애학생 안전 강화	15
2. 통합교육 환경 조성	16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16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8
2-3.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20
2-4.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22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25
4. 특수교육지원 지원체제 구축	28
4-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28
4-2.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30
4-3.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32
4-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35
5.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강화	40
5-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40
5-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42
5-3. 특수교육대상자 유아무상교육 지원	43
5-4.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지원	44
5-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	45
5-6.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50

1. 전북교육 기본방향

◉ 교육비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 교육지표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



2. 전북특수교육의 운영방향

비전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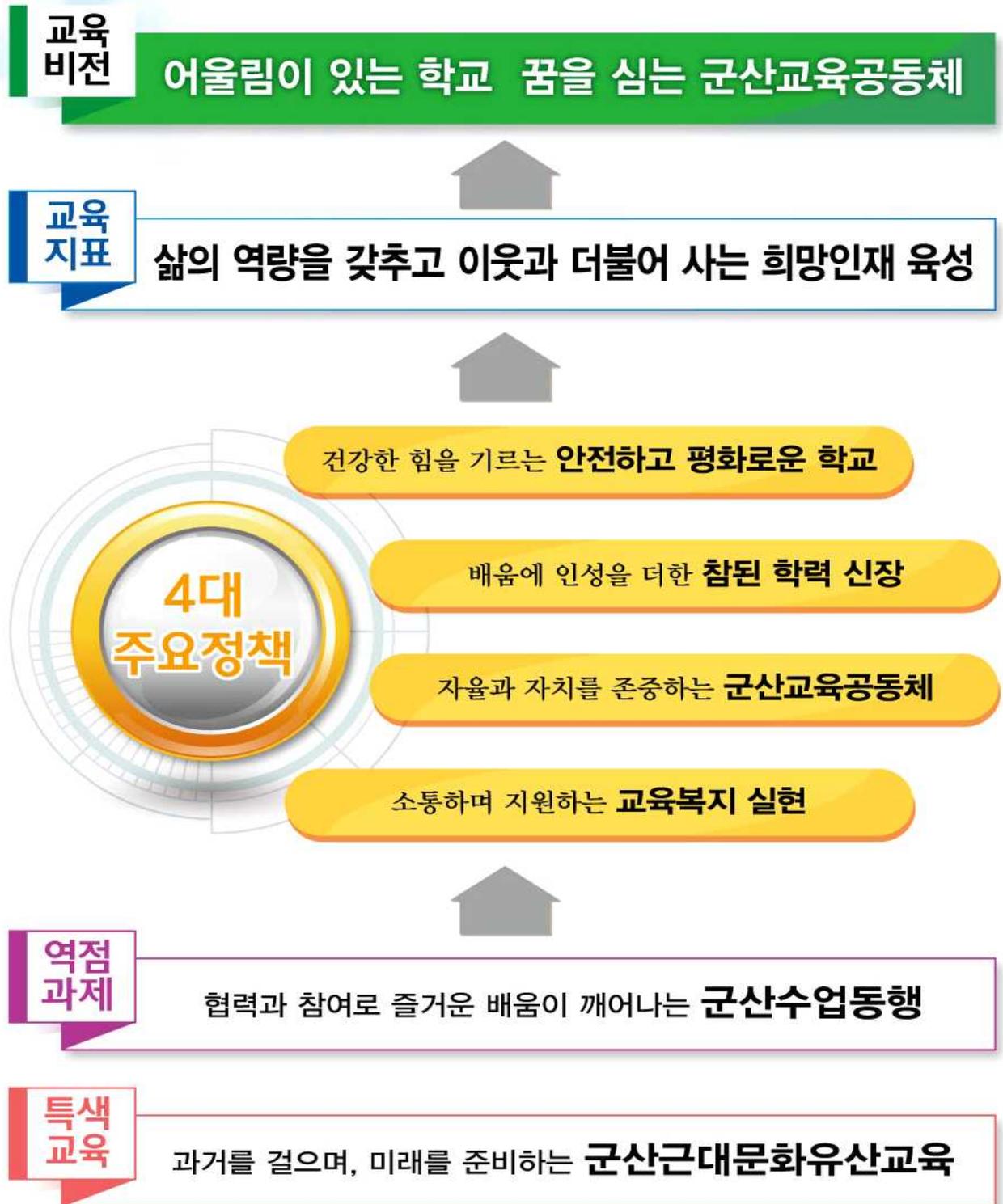
목표

- ▶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강화
- ▶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지원 환경 조성
- ▶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 강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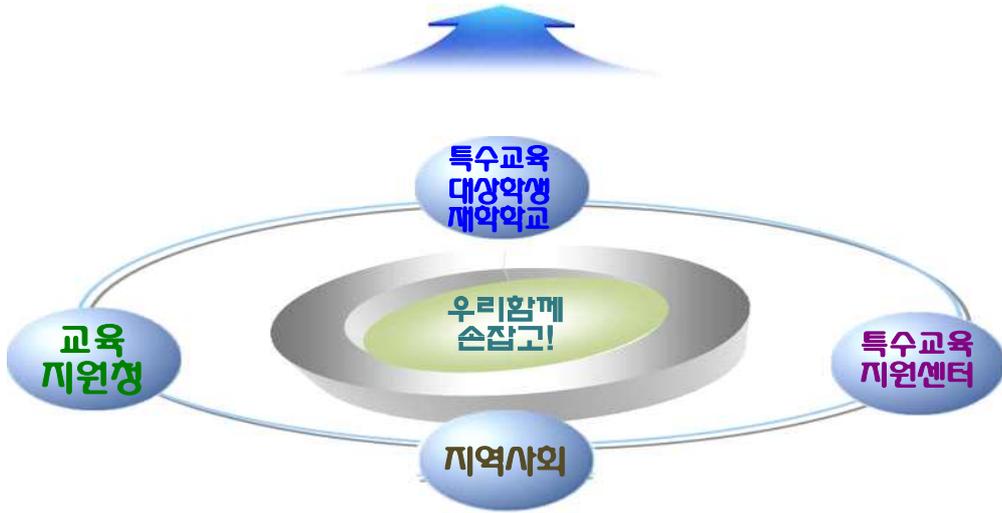
-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 2 통합교육환경 조성
- 3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4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
-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3. 군산교육 기본방향



4. 군산특수교육의 비전 및 목표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특수교사가 행복한 군산 특수교육



목 표

- 특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 교육력 강화
-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자긍심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특수교육 제고



II

군산 특수교육 현황

1.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2018.3.1.기준)

구분	발달지체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계
무소속 및 보육시설	1	2			3						6
유	2	4		4	2	2					14
초	15	116	6	22	6	8		6	1	5	185
중		47	8	4	13	8	1	4		3	88
고		55	4	7	7	3		5		7	88
총계	18	224	18	37	31	21	1	15	1	15	381

2. 특수학교 현황

순	학교명	학교수	학 급 수						비고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계	
1	군산명화학교(공립)	1	1	9	8	8	4	30	

3. 특수학급 현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	학급	교	학급	교	학급	교	학급	교	학급
1	2	26	30	9	10	5	8	41	50

4.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현황

센터장 (교육지원과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 및 관리		계
		교사	강사	치료사	교사	직무 지도원	주무관	특수행정 실무사	
1	1	2	2	2	4	1	2	1	16

5. 특수교육보조인력 현황

도교육청 배치		특수학교	총 계
유.초.중	고	19명	62명
36명	7명		

Ⅲ

2018 중점과제 추진계획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추진목적 및 근거

-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여건 개선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정과제 51-2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추진

- 수요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장기 수용계획 수립을 통한 특수학급 신·증설
- 일반학교 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문제 및 과밀학급 해소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거주지 인근에 배치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신·증설

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노력 지속

협조 및 유의사항

- 중증장애학생이 아닌 경도 특수교육대상학생 1명의 특수학급 운영 지양
- 수용계획 수립 이전(11월)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추진

1-2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으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추진내용

가.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과 창의성,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특성을 살린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단위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특색 있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장
-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해당 교과로 편성하되,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음.
- 전년도 단위학교 특색사업 및 교육활동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권장
- 일반학교와의 통합교육계획(수업교류, 행사교류 등) 수립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편성·운영

- '특수학급 교육과정' 또는 '특수교육 운영계획' 등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포함
-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통합교육 내실화 노력
-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에 적합한 통합교육 운영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철저
-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지양: 통합교육의 이념 실현 노력
- 특수학급 학생 통합학급 적응기간 자율적으로 운영

다.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지원 계획 포함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통한 통합학급 수업참여 범위 결정
- 일반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통합학급 교수-학습 활동 참여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교사와의 협력 강화
- 통합학급 교수-학습 수업방법(협력교수 등) 개선을 위한 노력

라. 통합학급교사의 책무성 강화

-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배치 기준 준수 및 연수 이수 철저
- 통합학급 담임교사 배치: 특수교사자격증 소지자, 대학원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중인 교사, 특수교육관련 연수 이수자를 우선 배치

마.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시각·청각장애 등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바.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학년 유의 운영

- 2018학년도는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학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적용 학년에 유의하여 운영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 학년 】

구 분	적용 학년	특수교육 전문교과
2016학년도	유치원	
2017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	
2018학년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19학년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0학년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특수교육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협조 및 유의사항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용 중 2018학년도 시행 사항 반영
 - 초등학교 : 초등학교 1~4학년은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 중 학교 : 특수학교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 필수
 - 고등학교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적용
- 신규-경력 특수학급 교사 간 특수교육 컨설팅 활성화 노력
 - 해당 지역에서 신규-경력 특수학급 교사 간 멘토-멘티 운영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적극 활용
- 특수교육 대상학생 취(진)학 설명회 개최
 - 시기 : 2018. 6 ~ 10월 중
 - 대상 : 관내 취(진)학 예정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1-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운영의 내실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추진내용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일반교육교원, 학부모 참여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 준수
 - 개별화교육지원 관련 부모교육 기회 제공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 시, 지원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

립 및 교육 지원

나.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교육과정 및 교과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조직 활용 및 자원 봉사자, 사회복지요원 등을 포함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의 확대

□ 협조 및 유의사항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교원,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 준수
- 인근 특수학교(급)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 지원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일반교육교원의 참여 및 역할 확대 방안 강구
- 일반교육교원과의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조직 활용 방안 강구
- 특수교사동아리 운영 지원,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우수사례 공유
-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연수

1-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교육 내실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촉진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력 향상
-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동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동법 제18조(장애 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

- 만 3세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이행 철저
 - 공립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학급 설치 및 특수교사 배치
 -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유치원 취원 희망 시 법적인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우선 입학
- 영아학급 운영: 전주유화학교 3학급
 - 대상 : 만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영아
 - 지원내용: 개별화가족지원팀 구성 및 장애영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 선정 시 필요한 교육지원 및 관련서비스 결정
-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공립 월 9만원, 사립 월 361천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만3~5세)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취학유예 및 면제 기준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반드시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법 제19조2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

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

- 장애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담당자 연수
-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유치원/센터) 연수 실시
 -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부모상담 및 정보 공유 초등학교 방문 체험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전이 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정보 공유 및 의견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 ※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의 입학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한 신규지표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 입학 전 적응지원 프로그램
 - 입학 예정 장애유아 부모 대상 입학 전 사전상담,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
 - 입학 전 초등학교 사전 방문 계획 수립·추진
- 입학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 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친숙한 학교’, ‘바른 학교생활’, ‘즐거운 학교생활’, ‘슬기로운 학교생활’ 등 4영역을 구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
 -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초기 적응 교육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함

※ 참고자료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가이드북

(‘경기도교육청(www.goe.go.kr)-통합자료실-특수교육과-과자료실’ 탑재)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학교(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적령기 의무교육 이행 독려
-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이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1-5 장애학생 안전 강화

□ 추진목적

- 특수학교(급) 안전교육 및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
-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기관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장애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및 방과후 성폭력 피해예방

□ 추진내용

■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 ※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장애학생 보호인력 배치·운영, 장애학생의 자기보호 능력 계발을 위한 교육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환경개선

■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 교육 실시

- 현장실태를 고려한 상황별(교통, 화재, 재난) 안전교육 수시 실시
- ※ 해당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유형 및 정도, 주변환경 등이 고려된 위험요소 등
- ※ 「119 다매체신고 서비스」 활용 방법 교육 등 현장성 높은 교육 필요
- 재난 발생 시 장애 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매뉴얼 재정비

■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 시설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학교주변 위험 환경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악취, 소음, 먼지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학교장 등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연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통합교육 환경 조성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 운영
-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지역 중심 전문가 인적자원 활용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학 등의 통합교육 지원 인력풀 구축 및 협력체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적응력 및 학력 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3개소 운영)

나.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 특수·일반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일반 교사의 특수교육대상유아 정보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2017)’,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 2017)’ 적극 활용 안내

■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협력 모형 개발·운영
- ※ 정다운학교 운영: (’18) 1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보급
- ※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 가이드북(교육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 적극 활용 안내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 정원 내 배치로 통합교육 환경 여건 개선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에 필요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을 담당할 인력 지원
- 교육지원청별 또는 권역별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운영

2-2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내용 포함) 확대
- 일반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는 매년 집합연수(워크숍) 3시간 이상 이수 실시
 - ※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한 지표 반영 예정
-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이수자 우선 배치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지원 강화

- 특수교육교원과 일반교육교원이 함께 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권장 및 우수 연구회 발굴
 - ※ 교사연구회 : 교과연구회, 개별화교육연구회, 행동지원 연구회 등

■ 통합학급담당 교사에 대한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실시

- 교육지원청 및 위탁연수 실시
- 통합학급당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직무연수 이수 기준
- ※ 30시간 연수 과정 2개(단 2개의 연수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 협조 및 유의사항

- 통합학교 관리자가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 과정(워크숍 포함) 안내
-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및 학년 초 장애이해 관련 워크숍 실시
-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교육연수 과정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2-3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확대

□ 추진목적 및 근거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 등 지원의 다양화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2조(개별화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및 위생시설 확보
- 특수교육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심리안정실 등) 구축
-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나.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특성,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고려한 생활기능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등에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위한 특수교육활동지원단 내 팀 구성·운영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
-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구성
- 학교가 의료기관, 대학,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연계망 구축

-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연계 지원 강화
 - ※ 심각한 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위기관리계획 수립

□ 협조 및 유의사항

- 단위 학교는 교과교육 외에 의학적 상담, 치료지원, 가족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심리·물리적 상태에 대한 지속 점검 실시

2-4 각급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각급학교의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 교육 기반 구축
-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추진내용

- 관내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예산 확보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기관 확대에 따른 홍보 확대, 예산확보 및 이행 철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제공 의무기관 및 내용
 - ※ (벌칙조항) 동법 제49조 :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용범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단계적 적용

구분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범위
'09.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사립 특수학교 ○ 특수학급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 설치 국·공립 학교
'11.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유치원 ○ 국·공·사립 학교
'13.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시설 ○ 교육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연수기관 등 ○ 사립 유치원

■ (제공내용) 정당한 편의제공 세부사항

영역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세부내용
<p>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보조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보조인력 배치(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참여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등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견·휠체어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 자료 등 ○ 통학과 관련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p>정보 접근·의사소통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수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정보청기기,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충

- 편의시설 관련 규정 안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201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 **전북 91.6%**, (전국평균 92.8%)
-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 계획 수립 및 설치 점검 강화
 -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자료(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자료)
(다운로드 경로 : 도교육청-교육혁신과-부서자료실(222번))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이행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노력

- 장애인 편의시설(재배정 사업) 확충을 위한 연차적 재원확보 노력
- 단위학교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설치토록 한 의무시설(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예산 적극 확보
 - ※ 관련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및 예산 확보요청(교육혁신과-24941, 2017.12.12.)
(2018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2018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 예산의 조기집행 및 다른 시설사업과의 연계집행을 위해 2018. 1월중 예산재배정
- 관리자 연수 등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 교육 강화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9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반영

□ 협조 및 유의사항

- 자체예산으로 설치토록 한 의무시설(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예산 적극 확보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 직무 역량 강화 및 진로의 다양화
-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 지원
-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 집중학년(기)제 운영 도입·확대 등을 통한 진로인식 및 탐색 기능 강화
-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고용지원 등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등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과와 진로·직업교육 융합 수업을 위한 환경 조성 등 전문화 지원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연수 및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나.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에서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 활성화
-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연계·협력 강화

- 현장실습 시 학생의 직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학생의 안전 대책을 포함한 교사의 입장지도 철저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전문기관이 없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 지원
 - 지역사회 사업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체제 구축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체제 구축

다.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 지원 내실화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자립생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지역사회 사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실습과 체험학습 지원
-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 참여
 - 직무 개발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기관 내 장애인 고용 창출
 - 일반학교에서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교원 대상 장애이해 교육 실시
-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 다솜학교, 전주은화학교
- 특수학교 「학교기업」운영 지원 : 전주선화학교
- 진로·직업교육 특수교사 동아리 운영 : 10팀
- 특수교사의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역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공공기관 및 학교 내 일자리 참여 확대
- 관계부처(기관) 연계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 관계부처(기관)와 연계한 현장 중심 진로·직업교육으로 장애학생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기회 확대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성과관리 강화

-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개인별 자립생활훈련 및 직업재활훈련에 대한 성과관리
- 취업률 외에 다양한 개인별 성과지표를 활용한 성과관리 후 그 결과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반영
- 졸업생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최소 3년까지 사후관리 실시
 - 취업한 졸업생에 대한 적응지도, 상담, 취업유지 여부 확인 등 장기적인 고용 안정 관리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시 실습지도 및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추진 방안 마련
- 전국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대회 준비
 - 대상 :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
 - 일정 : 2018. 10. 4(목)~5(금)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현황 제출(2018년 12월)

4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4-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전담인력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지원 확대
-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체계 확립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사회 변화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의 확대 및 특수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상담, 장애 영·유아교육, 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직업교육지원 등 학교현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하여 특수교육지원의 전문성, 다양화를 도모하는 특수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특수교육지원센터 독립성 확보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별도 운영 조직
 - 군산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센터 고유의 업무 수행
(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진단·평가 업무

구분	군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주요업무 계획 수립.추진 - 특수교육 컨설팅 관련 업무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선정·배치) - 특수교육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등 각종 통계 - 기타 특수교육 행정 지원 등 - 관련서비스 행정 업무 (보조인력 관리 및 배치, 치료지원, 방과후, 통학비 지원 업무 등 행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진단·평가 및 선별검사 지원 - 순회교육 -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운영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 관련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치료 프로그램 관리,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사항 등

나. 추진내용 : 2018년도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참고

4-2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 추진목적 및 근거

-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추진내용

가.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이해 내용 지도자료 활용

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내실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장애인의 날’ 장애이해(대한민국 1교시) 수업 실시
 - 장애이해 드라마 활용 장애인식 개선 수업 실시
-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knise.kr)의 장애이해교육 사이트(edu.knise.kr)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작한 편의시설관련 홍보물(카툰 등)을 교육자료로 활용
- 장애 인식개선 행사 개최
 - 학교별로 계획 수립하여 다양한 예술행사 개최
 - 행사 후 설문조사 및 감상문 작성을 실시하여 참가자의 장애인식 변화 조사
-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추진
 - 특수학교별로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학교와 공동

- 활동함으로써 모든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 도모
-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하는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 일반학교·특수학교·장애인시설 자매결연 권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소속 직원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다.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홍보 강화

- 유·초·중등학생 및 일반인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홍보 콘텐츠 활용
- 장애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 콘텐츠 활용 방안 마련

4-3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장애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장애학생의 인권보장과 자기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 센터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팀장, 특수학교(급) 교장(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필수 인원으로 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
 - 내용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3월 초
 - 협의회 개최: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
 - 현장지원: 매월 최소 1회 이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현장 직접 방문 점검
 - 지원내용: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교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미담사례 등
 - 결과보고: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현장지원 결과를 매월 30일까지 도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도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취합하여 국립특수교육원에 보고)
-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 진술조력 기능 포함

나.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 일반학교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장애인 인권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연 2회 실시
 - ※ 전북교육청 장애인 인권교육 자료, 국립특수교육원 보급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 마당-별별 이야기 등 활용
- 특수학교(급)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장애학생이 자신의 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 전북교육청 장애인 인권교육 자료, 기 보급된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 교육자료 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마련 권장
-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체계 구축

다.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수시 성교육 실시
 -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성교육 시 활용
- 특수교사의 성교육 및 장애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장애학생 성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보건교사)의 협업체계 구축

라. 문제행동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교육활동지원단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자신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기능평가 및 문제행동 대처의 어려움 해소 지원
 -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 ※ 2016 문제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결과,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사례별 중재 가이드북·매뉴얼 활동

■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 심각한 문제행동의 경우 보건교사와 협력, 의사 및 관련 전문가 등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연계 지원 확대

□ 협조 및 유의사항

- 각급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시 기관의 장 또는 교직원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에게 보고
 - 학교폭력·성폭력 발생 시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 담당자,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은 인권지원단에서 지원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및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연수 및 홍보 철저
 -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 특수교사의 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및 참여

4-4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병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군산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연 4회 이상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조직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준수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의무·무상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지원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진단·평가 의뢰 활성화
-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안내 및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홍보 강화

■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 병·의원, 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발견

- 특수교육대상 의심 학생에 대한 검사, 관찰, 면담을 통해 적격성 판정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진단·평가 계획 수립
 -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학교 및 유관기관에 안내
 - 추진 계획에 따라 진단·평가위원 구성 및 위원 위촉
 - 위촉 위원에 대한 사전연수, 검사도구 및 서류 정비, 각종 자료 수집
- 진단·평가팀 구성
 - 진단·평가 팀장은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를 팀장으로 함
 - 진단·평가 팀원은 특수교사, 상담교사, 치료전문가, 의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육 관련 대학교수 등 장애영역별 진단·평가 전문가로 구성함
- 사전 연수: 진단·평가팀 구성, 진단·평가의 시행 방법, 결과 처리, 유의사항 등에 대한 연수 실시
- 검사도구 및 관련 서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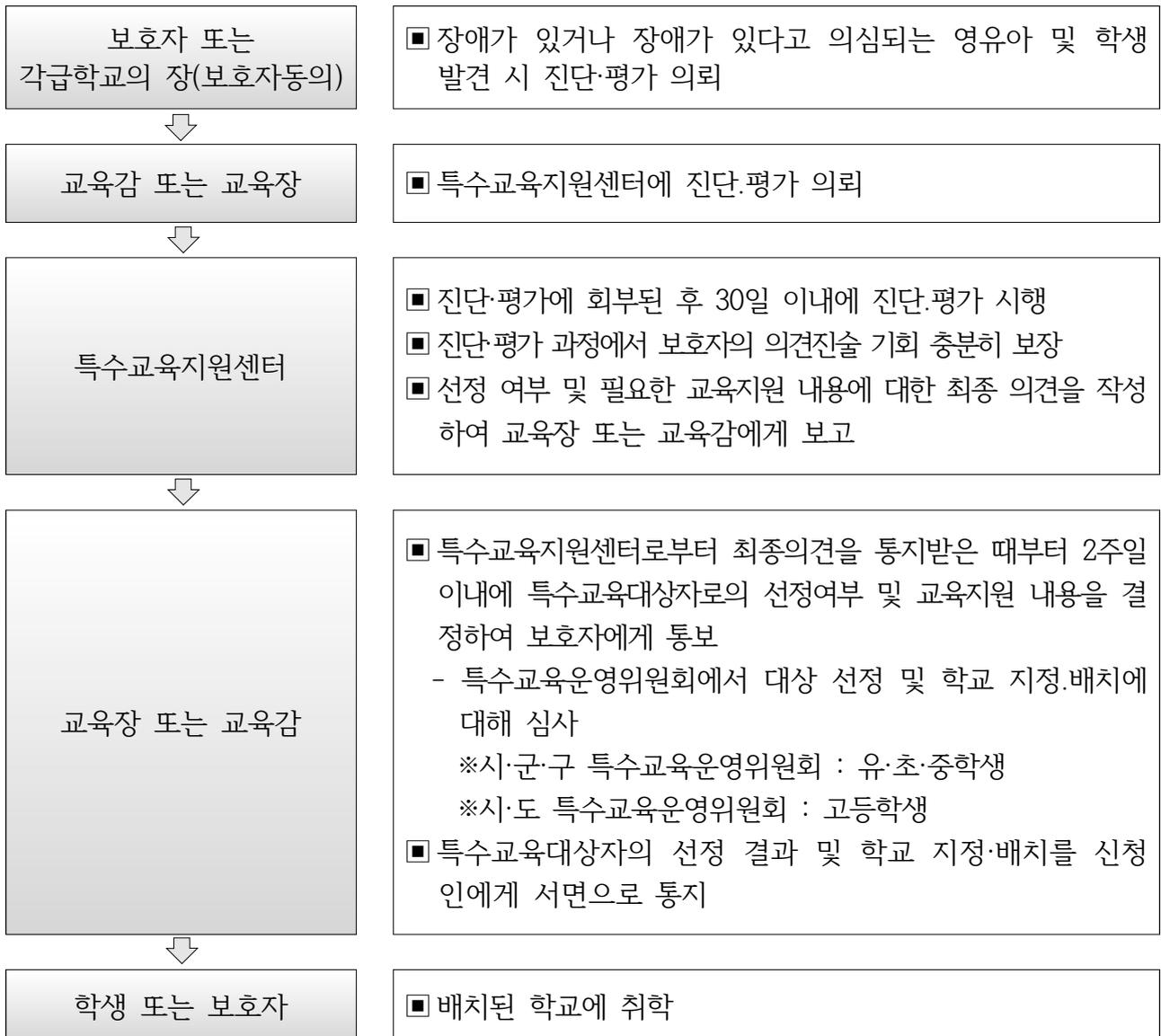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절차



- 진단·평가 의뢰(접수):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진단·평가 의뢰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평가 의뢰
- 진단·평가 안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평가 의뢰를 접수한 후 대상자에게 진단·평가 일시 통보
- 진단·평가 실시: 의뢰받은 검사(진단·평가) 실시, 기초 면접 등 실시
- 평가결과 안내: 평가결과와 관련 교육적 조치(권고사항)를 학부모에게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진단·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

- 진단·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관련서비스, 순회교육 여부 등) 판단
- ※ 기타 세부 사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업무 길라잡이 참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교육 → 특수교육 → 자료실에 탑재)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의뢰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또는 소위원회)에서 진단·평가 결과를 심사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법 제15조)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
-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시 유의사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특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 되더라도, 학적은 일반학급에 편성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학습부진아가 학습장애아동으로 선정·배치되지 않도록 지침 준수
- ※ 기타 세부 사항은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참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교육 → 특수교육 → 자료실에 탑재)

라.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입학 또는 재입학·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만3~5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5조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 ※ 국가인권위원회 원고(2015. 8. 19.)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반드시 특수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 절차 : 학부모 요구→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정→학부모에게 통보→배치 철회(일반학생으로 간주)
- 선정 취소가 결정되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중단
- 희망에 따라 선정취소가 되었으나,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종 편의 제공 철저

5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강화

5-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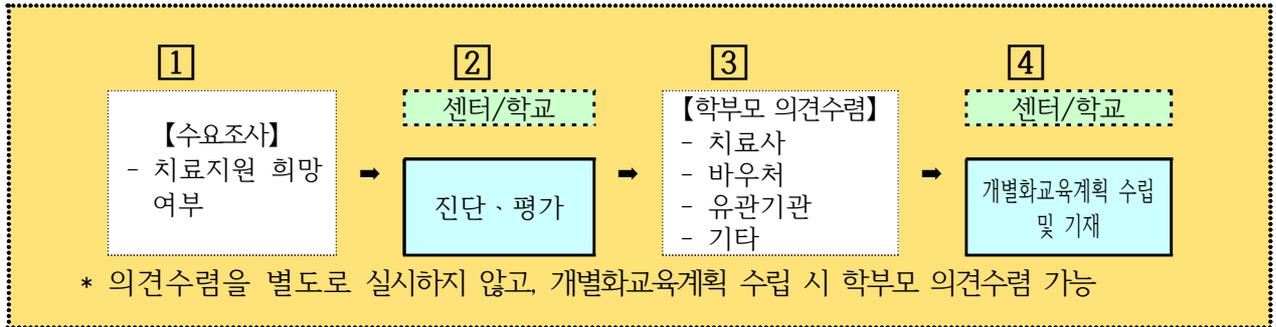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동 법 시행규칙 제 2조(장애의 조기발견), 동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취학유예자는 지원불가)
- 치료지원 영역 및 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보행훈련, 기타 관련서비스(음악, 미술, 심리운동, 감각통합)
 - 의사의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의 치료지원
 - 유관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용
 - ☞ 위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 2018년도 중 치료지원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담당교사의 업무 경감과 학부모의 편의 도모 예정
- 치료지원 제공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교육지원 의견 제시(치료지원 포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시한 교육지원 내용을 토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 국가면허 또는 주무부 장관 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 다음의 인력이 제공하는 치료지원 활용 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 민간자격 소지자

□ 협조 및 유의사항

■ 치료지원대상학생 지원 지침 숙지

- 치료 중복 지원 및 과다 지원 방지 철저
- 치료지원 지침 숙지를 통한 민원 발생 억제 노력

■ 미인증사설치료기관에 치료지원비 지출 발생 방지를 위한 관련 서류 검토

■ 취학유예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불가

5-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중증 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 제외대상 : 취학유예자, 무료통학버스 이용자, 부모가 원하여 자가 통학하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관련 지원 대상자 등

□ 협조 및 유의사항

-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민원인에 대한 안내 강화

5-3 특수교육대상자 유아무상교육

□ 추진목적 및 근거

- 공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현
-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

■ 운영 내용

- 공립: 1인 월 90천원 이내 실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경비)
- 사립: 1인 월 361천원 이내 실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경비)

□ 협조 및 유의사항

-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초등학교 취학 유예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 누리과정 지원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람
- 공 · 사립 유치원이 아닌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어린이집 등)

5-4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공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실현
-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내용

-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 특수학교는 학교별, 특수학급은 학급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 수요자 요구를 고려하여 치료지원 관련프로그램을 개설 확대운영

■ 지원기준

- 1개 프로그램 당(5명 이상 기준, 유치원은 4명 이상) 월 50만원 지원
 - ※ 단,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된 유치원은 지원 제외
- 참여 학생이 1~4명(유치원은 1~3명)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1인당 8만원 지원

나.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 과정 전담인력 지원

- 지원대상: 유치원과정 특수학교(급)
- 지원기준: 방과후과정 3명 이상 운영 학급

□ 협조 및 유의사항

- 취학 유예한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임
-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누리과정 방과후 지원비와 중복 지원 불가
- 목적에 맞는 집행 및 복무관리 철저

5-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추진내용

가. 용어 의미

- 건강장애학생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 보호필요학생 : 건강장애 선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질병, 화상, 교통사고 등 심각한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유급)이 예상되는 학생
- 병원학교 : 장기입원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 교사 1인이 운영하는 학급형태이나 여러 학교급, 학년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병원학교로 통칭
- 원격수업 :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장애 학생이나 보호필요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강의나 탑재된 콘텐츠를 활용하는 학습

나.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만성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학교 운영 및 지원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적응 도모
-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다. 원격수업 수강학생 지원

- 만성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연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의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학생에게 원격수업 수강 지원
- 정신질환학생은 원격수업 수강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의 소속학교 담임교사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 관리 등에 관한 소속 학교 담임교사 및 업무담당자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는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준수(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및 작성 지침 내용 확인)
-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 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연수 강화

마. 건강장애 선정 및 재선정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의료적·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선정
 - ※ 건강장애 선정: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절차 진행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에는 선(先)교육 지원 가능
- 정신질환으로 인한 학생이 건강장애로 선정되거나,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 지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 ※ 정신질환학생은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불가

□ 협조 및 유의사항

-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활용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시 전달
-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 자체 연수 실시하도록 지원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안내 등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관련 상담 시 친절히 응대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
-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보호자 등의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
-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공문으로 반드시 등록 해지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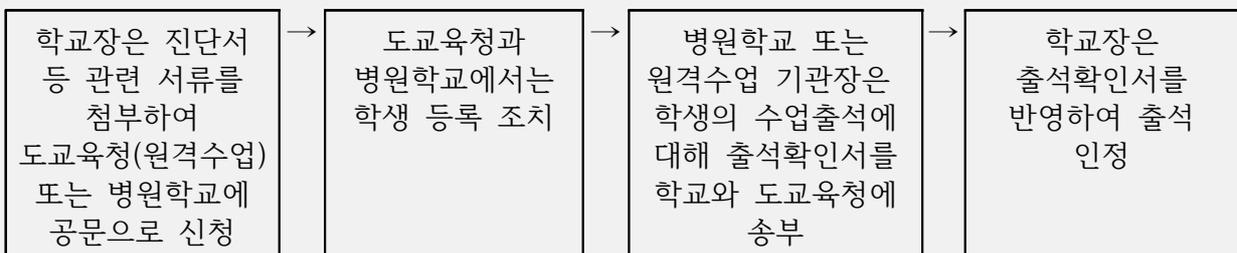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수강학생 성적처리 및 출석인정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 또는 보호필요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출결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 또는 보호필요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 성적처리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 또는 보호필요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 또는 보호필요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출석 인정

- 병원학교 입교 또는 원격수업 수강을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병원학교나 원격수업에 참여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출석인정 절차



- 학교장은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도교육청 또는 병원학교에 공문으로 등록 해지 조치함.

♠ 관련업무계획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지원 업무 계획

1. 취지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의 건강장애학생에게 병원학교, 원격수업을 지원하여 학습권 보장

2.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3. 병원학교 운영 지원

- 대상 :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 신청
 - 소속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병원학교로 직접 신청
 - 병원학교에서 입급 확인서를 소속학교로 통보
- 병원학교 :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한누리병원학교
 - ※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 : <http://hoschool.ice.go.kr>

4. 원격수업 수강 지원

- 대상 : 초·중·고등학교 건강장애 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 운영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꿈사랑학교
- 학사관리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소속학교담임, 특수교사, 원격교육기관이 상호협력하여 건강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원격수업 수강 관련 절차
 - 수강 의뢰 : 소속 학교장→도교육청→운영 기관
 - 원격수업 수강
 - 원격수업 수강 명단 및 철회명단 통보
 - ※ 운영 기관→도교육청→소속학교
 - 행정사항 통보 : 운영 기관→도교육청→소속학교

5-6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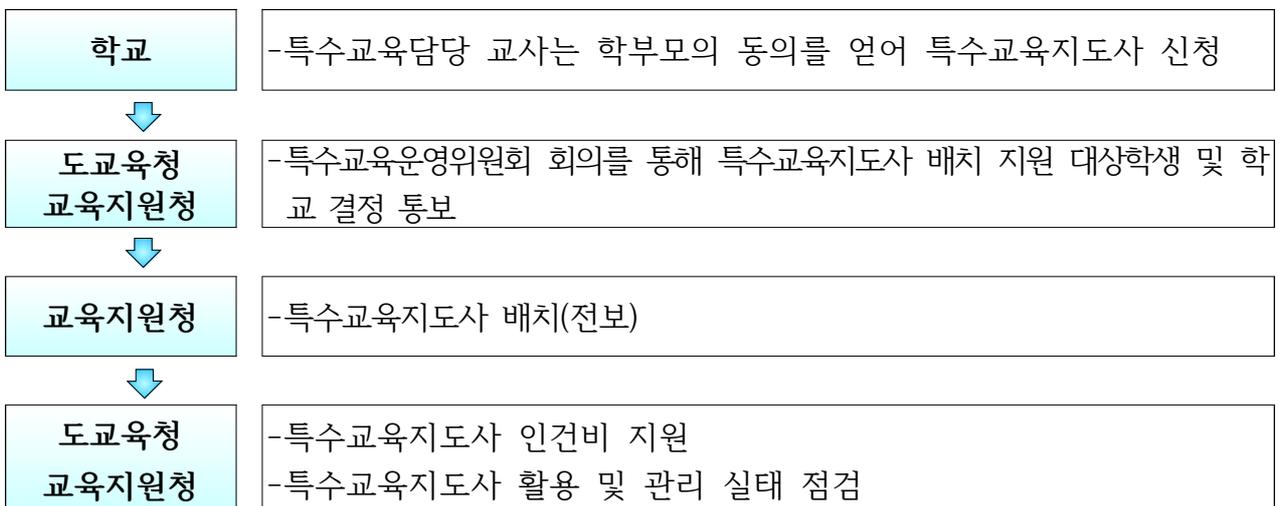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화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성과 제고
-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동법 제22조(개별화교육), 동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가. 특수학교(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리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도·중복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기준으로 운영
-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
-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특수교육지도사에 준함
-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절차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 부설학교는 국고에서 지원

나.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관리

- 특수학교 기숙사에 배치된 학생들의 기숙사 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숙사 생활지도원 및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다.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관리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등·하교 등을 위한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배치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원 관리 철저
-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강화(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해 행·재정업무 역할 부여 금지
-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근무평정 철저

I.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요	57
1. 운영 목적	57
2. 기본 방침	57
3. 근거	57
4. 노력 중점	58
5. 특색 사업	58
6.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59
II.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용	61
1. 특수교육 지원	61
1-1. 통합교육 컨설팅 및 순회교육	61
1-2.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64
1-3.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담당교사(통합학급 미설치교) 연수	65
2. 교수·학습 활동 지원	67
2-1. 찾아가는 교육과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67
2-2. 특수교육대상학생 『꿈드림』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68
2-3. 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마음마다 걸음마다 사진마다』 사진교실 운영	70
2-4. 특수교육대상학생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	70
2-5.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공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71
2-6.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프로그램 『너DO 나DO 날개달자』 운영	72
2-7. 교수·학습 자료 및 교재교구, 보조공학기기 지원	72
3. 진단평가	74
3-1.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관리 및 상담	74
3-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75
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77
4-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77
4-2.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교육 강화	79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81
5-1. 순회치료 지원	81
5-2.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82
5-3.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83
5-3-1. 특수교육대상학생 부모교육	83
5-3-2.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쉼플라워 중창단 『온누리 노래교실』 운영	84
5-3-3. 행복한 가정 만들기 『똑딱똑딱 목공소』 운영	84
5-3-4. 『아름드리 가족캠프』 운영	85
5-3-5. 장애 유아 교육 및 가족지원 『엄마랑 놀이터』 운영	85
5-3-6. 방학 중 프로그램(계절제) 형제·자매 프로그램 『가가호호』 운영	86
5-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및 진학지원	86
5-4-1.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적응지원	86
5-4-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및 진학지원을 위한 설명회	87
5-5. 홈페이지 관리와 자료 탑재 및 홍보	88
6.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	90
III. 월별 업무 추진 계획	91

I.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개요

1. 운영 목적

-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지원,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 지원, 가족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학교현장 지원확대
- ◆ 가정·시설 및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제공
- ◆ 지역 여건에 따른 전문적 지원을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2. 기본 방침

- ◆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강화, 가족지원 강화
- ◆ 특수교육대상자 진로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 ◆ 지역별 수요 및 특성에 따른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 특수교육 선도
- ◆ 특수교육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간의 협력방안 강구

3. 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 ◆ 전라북도교육청 '2018 전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4. 노력 중점

- ◆ 찾아가는 특수학급 교육과정 지원
- ◆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학생 발견 및 정보 관리
- ◆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 교구 대여 사업
- ◆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프로그램 및 체육활동 활성화

5. 특색 사업

가. 가족지원

- ◆ 특수교육대상 학부모 『온누리 노래교실』
- ◆ 1박2일 『아름드리 가족캠프』
- ◆ 방학 중 형제·자매 통합프로그램 『가가호호』

나. 『꿈드림』 문화예술 동아리

- ◆ 특수교육대상학생 『꿈토리』 인형극 동아리
- ◆ 특수교육대상학생 『샤인드림』 우쿨렐레 동아리
- ◆ 『우리들의 이야기』 동아리 발표회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스포츠 활동

- ◆ 재활승마 프로그램 『말 달리자!』
- ◆ 뉴스포츠 프로그램 『도전! 튼튼교실』

라. 장애인권보호 프로그램

- ◆ 더봄학생 대상 『마음 만지기』
- ◆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 ◆ 성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우리들의 성』

6.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상담실	진단·평가실	치료실	교육활동실	자료실	다목적실	계
	1실	1실	3실	2실	3실	2실	1실 공용	
활용	특수교육 지원	상담지원	특수교육 진단평가	언어치료 및 미술치료 관련 검사 및 치료활동	학생 및 학부모 교육활동	교수·학습 자료 및 보조공학 기기 구비	교육 및 연수 활동	13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및 담당업무

담당	인원	업무	비고
센터장 (교육지원과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통할 	
부센터장 (특수담당 장학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조정 	
팀장 (업무총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총괄 ■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장애인권 인권지원단 운영 ■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학생 성교육 운영 ■ 교사 및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운영 	
초등교육 지원교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정보관리 ■ 교육프로그램 운영 ■ 가족지원 사업 운영(온누리 노래교실, 가족캠프) ■ 학부모연수 	
장애유아 지원교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정보관리 ■ 장애영·유아 프로그램 및 장애영·유아 학부모연수 운영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 교원 연수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및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등교육 지원교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내용 작성 ■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 중등 특수교육대상자 프로그램 운영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관련 업무 ■ 홈페이지 운영 및 교재교구 관리 	
시간제 치료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지원 (순회, 지원센터) ■ 치료지원관련 진단평가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다. 2018년도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역점사업

추진 계획	추진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영·유아와 미취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견 및 정보수집관리 ■ 장애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선별검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일반유치원 배치 확대 및 학비 지원에 대한 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단 운영
진단·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진단·평가 위원회 운영(특수교사, 치료사) ■ 관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에 대한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에 따른 제반 교육적 서비스 안내
상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활동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에 대한 상담 활동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배치에 대한 상담 활동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과 연계한 조기발견 및 정보관리 ■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장애유아 의무교육 지원 홍보 및 상담 ■ 장애 영·유아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영·유아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 영·유아 담당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교수학습 지원 및 통합교육 지원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 개별화 교육지원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전반적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 연수 운영 ■ 특수학급 재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꿈드림』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인형극, 우쿨렐레동아리) ■ 방학 중 형제·자매 통합프로그램 운영 ■ 문화공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순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재택 및 시설 유·초·중등 또는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학생의 순회교육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치료사 활용 내방 및 순회 치료지원 실시 ■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령기아동 대상으로 치료지원 제공 ■ 특수교육 대상학생 순회치료대상자 선정 및 치료지원 ■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실시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교재교구와 학습 보조기 관리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후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쉼플라워중창단 온누리 노래교실 운영 ■ 부모교육 연수 운영 ■ 1박2일 아릅드리 가족캠프 운영 ■ 장애 영·유아 교육 및 가족지원 「엄마랑 놀이터」 운영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성교육전문가, 학부모, 경찰관 위원으로 인권지원단 구성 ■ 월 최소1회 학교방문 모니터링 ■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담

Ⅱ.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용

1 특수교육 지원

1-1. 통합교육 컨설팅 및 순회교육

목 적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며 각 학교에서 수업일수의 2/3이상을 등·하교하면서 교육받기에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순회교육의 체계적 접근을 통한 교수학습 효과 제고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제 25조(순회교육 등)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통합교육 컨설팅

- 1) 대상 : 관내 특수학급, 통합학급 교사
- 2) 통합교육 활동지원
 - 가)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전략 및 방법 지원
 - 나) 특수교육 관련 자료 대여
 - 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자료 구입 및 지원·대여
 - 라) 통합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적 수정방안 안내
- 3)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컨설팅은 기존의 개별수업지원 중심에서 통합교육지원 중심 내실화 운영으로 전환
 - 나) 지원내용 : 일반학교 통합교육계획 수립 지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자료 지원, 문제행동 지도 및 생활지도 지원, 특수교육 관련 상담,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관련 전반적인 사항
- 4) 개별화교육 지원
 -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 교육에 대한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지도 사례 안내

나. 순회교육

1) 방침

- 가)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급에 해당하는 자격소지자가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융통성 있게 운영
- 나) 학생 1인당 주 2회 이상 방문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방문교육·통신교육·과제학습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 확보
- 다) 1시간 기준 학생 수업시간은 유치원 30분, 초등학생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생 50분으로 운영하되,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기후·학습 내용에 따라 조정 운영 가능
- 라) 소속 학교에서 작성한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교육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순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순회교육 실시
- 마) 순회교육계획은 소속 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순회교사가 협의하여 작성
- 바) 순회교육 근무상황부와 순회교육 일지 작성을 통한 순회교육의 전반적 관리

2) 순회교육 대상 및 지원방법

- 가) 대상 :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재택 또는 시설학생, 일반 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학생
- 나) 지원방법
 -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 작성한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순회교육지원
 - 순회교육계획에 의한 주 2회 이상 방문수업이 원칙이며, 방문교육, 체험학습, 과제학습 등 다양한 방법의 운영
 - 재택순회교육 수업일수는 150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을 줄일 수 있으며 수업일수에는 방문지도, 과제학습,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및 체험교육 등의 일수를 포함함

3) 순회교육대상자 선정 방법

- 가) 선정 방법 :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정
- 나) 선정 절차

기간	내용	주체
3월 셋째주	순회교육 신청	학부모, 해당학교
3월 넷째주	대상자 심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3월 다섯째주 이후	선정 결과 통보 및 순회교육 실시	순회교사

4) 순회교육 계획 구성요소

가) 순회교육대상 학생 현황 파악

나) 개별화교육계획

- 소속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작성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첨부
- 개별화교육계획은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소속 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순회교사의 협의 하에 수시로 수정하여 순회교육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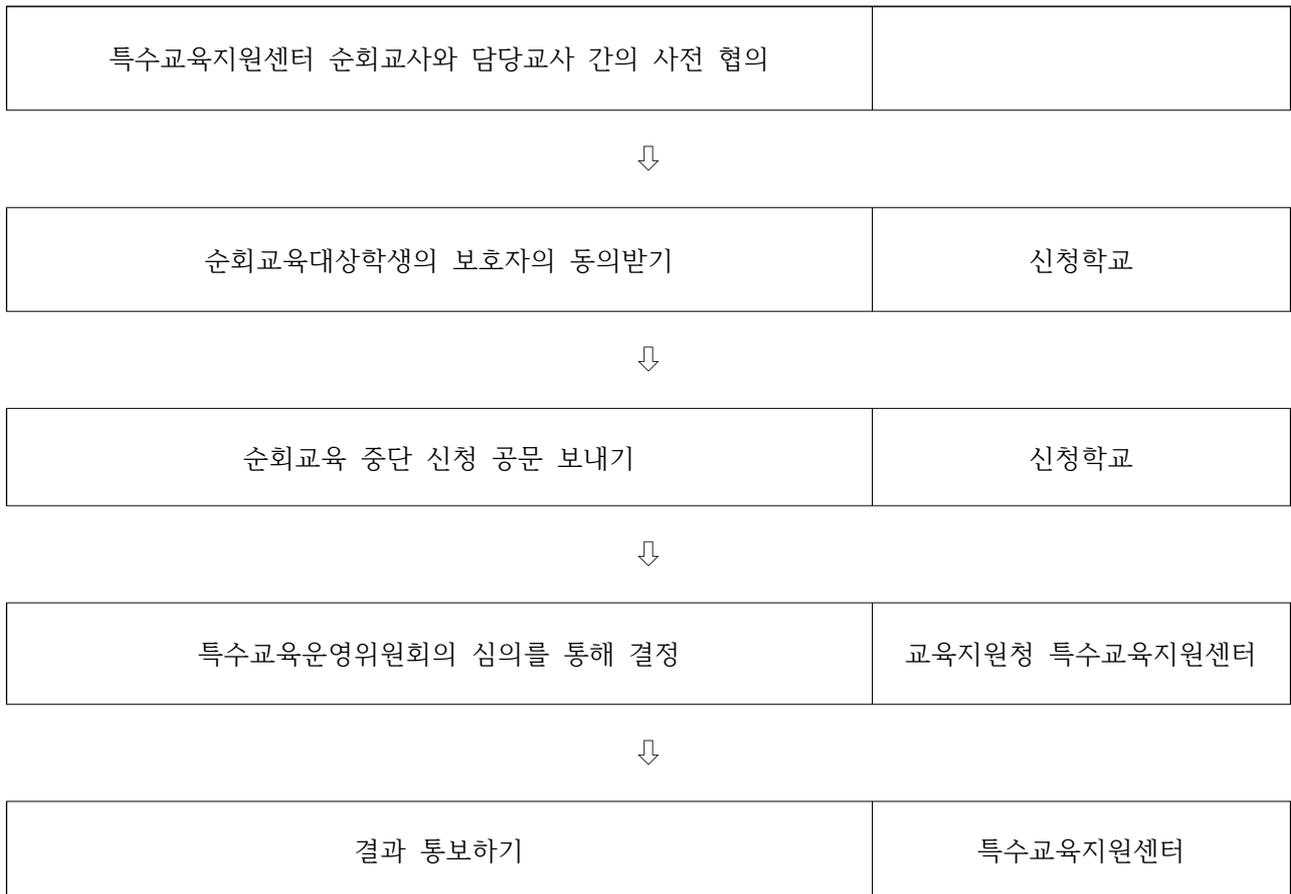
다) 순회교육 평가

-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
- 순회교사가 학기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소속 학교로 평가 결과를 보고함(연2회)
-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를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관리

5) 순회교육 중단(순회교육 취소는 수시로 가능)

가) 순회교육 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 중 수업일수의 2/3이상의 출석이 가능해진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순회교육을 중단할 수 있다.

나) 순회교육 중단 절차



다) 순회교육 중단 동의서 양식

순회교육 중단 동의서	
00초등학교 00학생은 2018학년도 순회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되었으나, 수업일수의 2/3이상의 출석이 가능해진 관계로 순회교육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2018.	
이에 동의합니다.	
학부모:	(인)

1-2.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목 적

장애의 조기발견 및 선별로 2차적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을 촉진시켜 가계 부담 경감 및 사회비용의 최소화로 사회통합을 추진하고자 함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가. 일시 : 2018. 1. ~ 2018. 12.

나. 장소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가정, 순회교육대상 공·사립유치원

다. 대상

- 1) 장애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장애위험 영·유아
- 2) 공·사립 유치원 재학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라. 실시 및 내용

- 1) 유관기관과 연계한 조기발견 및 정보관리
 - 가)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 및 선별검사 지원체계 구축
 - 나) 유관기관과 연계한 장애 영·유아 정보관리
- 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홍보, 상담 활동
 - 가) 특수교육대상 유아 유치원 의무교육, 장애유아교육비 및 지원비 홍보
 - 나) 홍보자료제작 및 배부(유관기관, 유치원, 학교 등), 홈페이지를 통한 특수교육 지원내용 안내
 - 다) 내방 및 전화 상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 3)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순회교육 지원 : 공·사립유치원, 가정 및 시설 거주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순회교육 실시(주2회)
- 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통합교육지원
 - 가)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통합교육지원 중심으로 지원
 - 나)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 장애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 대상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 5) 장애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 가) 장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나) 장애 영·유아 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엄마와 함께하는 『엄마랑 놀이터』 운영
 - 다) 장애 영·유아 학부모 연수(2회기 예정)
 - 라) 특수교육대상 유아 취학 전 준비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 부모상담 및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유아 예비학교 운영
 - 특수교육대상 유아 입학설명회(2019학년도 취학 및 입학설명회 운영 시)
 -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학부모 연수 운영
 - 학교 견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

1-3.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특수교육 담당교사 연수

목 적

특수학교(급) 교원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대 및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8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운영방침 : 통합학급 교사 지원을 위한 사례중심, 현장중심 연수 실시

나. 연수운영 방법 :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및 강사초빙 연수 강의

다.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육 담당교사(통합학급 미설치교) 연수

1) 일시

- 특수학급 담당교사 : 2018.4.5.(목)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담당교사 : 2018.4.6.(금)

- 2) 대상 : 관내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육 담당교사
- 3) 주제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협의 및 설명회
- 4) 장소 : 특수교육지원청 3층 다목적실

라.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 연수

- 1) 일시 : 2018. 9월
- 2) 대상 : 관내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
- 3) 주제 : 특수교육대상자 인성 키움 방법
- 4) 장소 : 특수교육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

마.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담당교원 연수

- 1) 일시 : 2018. 5월(1회기)
- 2) 대상 :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장애전담 및 통합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관장, 담당 교원
- 3) 인원 : 20명
- 4) 주제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연수
- 5) 장소 : 특수교육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

바.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인력 역량 강화 연수

- 1) 일시 : 2018. 11월
- 2) 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인력(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
- 3) 주제 : 진단·평가 관련 및 전문성 신장 연수
- 4) 방법 : 외부 연수 수강

사.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업무담당교사(통합학급 교사포함) 역량 강화 연수

- 1) 일시 : 2018. 5월~11월
- 2) 대상 : 관내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업무담당교사(통합학급 교사 포함)
- 3) 주제 : 특수교육대상자의 이해 및 교과지도 관련
- 4) 장소 : 특수교육지원센터

2 교수·학습 활동 지원

2-1. 찾아가는 교육과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 찾아가는 특수학급 교육과정지원_독서교육프로그램 『책소리 BOOK소리』

사업담당자	김은영
-------	-----

가) 목적

- 특수학급 교육과정 및 교과의 특성상 비주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다양한 주제 및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특수교육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연령과 지적발달에 알맞은 기초독서능력과 자기주도적 읽기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기회 제공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4. ~ 2018. 10.
대 상	초·중·고 특수학급
내 용	독서교육프로그램
방 법	전문강사 파견 프로그램 운영, 학급별 5회기
장 소	각급 특수학급

나. 찾아가는 유치원 통합교육과정 미술교육프로그램 『생·크·림』 운영

사업담당자	임혜란
-------	-----

-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 유아 통합지원을 통해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일반유아와의 조화로운 교육환경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 도모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5. ~ 7. / 2018. 9. ~ 11.
대 상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재학하고 있는 유치원의 통합학급
내 용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미술 놀이터
방 법	전문강사 파견 프로그램 운영, 학급별 5회기
장 소	해당 유치원의 통합학급

2-2. 특수교육대상학생 『꿈드림』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표현력 향상 및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친구들과의 유대감 강화, 특수교육대상학생 의사소통 및 사회성 기술 향상, 심리적·정서적 안정 도모, 향후 공연 및 행사 찬조 출연 등 장애인식개선 홍보단 활동

가. 『꿈토리』 인형극 동아리 운영

사업담당자	임혜란
-------	-----

가) 목적 : 인형 만들기, 더빙, 인형 조작 및 연기연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및 표현력 향상,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3. ~ 2018. 12.(방학기간 제외)
대 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동아리 당 10명 이내
내 용	발성 및 구연 연습, 개작 및 대본쓰기, 더빙, 인형 조작, 인형 소품 만들기, 인형 만들기, 인형극 연습하기, 인형극 공연하기 등
방 법	학기 중 지속적인 센터 내방프로그램 운영(방학기간 제외) 주 1회 주강사 1인, 보조강사 2인의 강습 및 연습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활동실2, 다목적실

나. 『샤인드림』 우쿨렐레 동아리 운영

사업담당자	임혜란
<p>가) 목적 : 리듬 및 코드 배우기, 노래부르기, 앙상블 연주를 통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소질 계발 및 심리·정서적 안정 도모</p> <p>나) 운영 및 실시</p>	
기 간	2018. 3. ~ 2018. 12.(방학기간 제외)
대 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동아리 당 10명 이내
내 용	연주자세 및 기본음계 익히기, 리듬 배우기, 코드 익히기, 앙상블 연주하기, 우쿨렐레 연주기법 익히기, 노래 부르며 연주하기
방 법	학기 중 지속적인 센터 내방프로그램 운영(방학기간 제외) 주 1회 주강사 1인, 보조강사 2인의 강습 및 연습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활동실2, 다목적실

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발표회』 개최

사업담당자	임혜란
<p>가)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 학생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활동 발표회를 통한 표현력 향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예능발표회 및 공연, 장애인식개선 홍보 활동(찬조출연 등) <p>나) 운영 및 실시</p>	
시 기	2018. 12.
참 가 팀	인형극 동아리, 우쿨렐레 동아리, 컵타교실, 사진교실 등
내 용	인형극 공연, 우쿨렐레 연주, 컵타 연주, 사진작품 전시회 등
관람대상	동아리 참가학생 가족 및 해당학교 교사, 그 밖의 관심있는 자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

2-3. 특수교육대상학생 『마음마다 걸음마다 사진마다』 사진교실 운영

사업담당자	박진형
-------	-----

가) 목적 : 사진찍기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여가활용능력과 자기표현능력을 향상시키며 또래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

나) 운영 및 실시

일 시	2018. 4. ~ 2018. 12.(방학기간 제외)
대 상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내 용	사진촬영하기, 사진감상하기, 모델되어보기 등
장 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전산실 및 군산일원

2-4. 특수교육대상학생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활승마 프로그램 『말 달리자!』

사업담당자	양은지
-------	-----

가) 목적 : 재활승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사회적, 감각운동 및 인지적 효과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재활에 긍정적인 효과 도모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4. ~ 2018. 12.
대 상	관내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희망자 중 기승 및 교감활동 가능한 학생
내 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활승마 및 교감활동
방 법	교육장소(승마장)로 방문하여 운영
장 소	승마장

나. 뉴스포츠 프로그램 『도전! 튼튼교실』 운영

사업담당자	박진형
-------	-----

가) 목적 : 뉴스포츠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기초운동능력과 체력을 향상하고 표현활동영역의 확장과 신체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

나) 운영 및 실시

일 시	2018. 4. ~ 2018. 12.(방학기간 제외)
대 상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내 용	스태킹컵을 이용한 컵타교실
장 소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활동실

2-5.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공연지원프로그램 『알라뷰_I LOVE VIEW』 운영

사업담당자	임혜란
-------	-----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적 소양 함양 도모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상반기 - 2018. 7. / 하반기 - 2018. 12.
대 상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내 용	영화 관람 등
방 법	연2회, 담당교사(특수교육지도사 포함) 및 보호자 인솔 관내 영화관 집결 영화 관람
장 소	군산 관내 영화관

2-6.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프로그램 『너Do 나Do 날개달자』 운영

사업담당자

박진형

가) 목적 : 전환을 앞둔 중3·고3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사회 적응력과 자존감 향상을 높이고 졸업 전 아름다운 추억만들기 기회 제공

나) 운영 및 실시

시 기	2018. 12월 또는 방학 중 예정
대 상	중3·고3 특수교육대상학생(졸업예정자)
내 용	·전환을 대비한 사회적응력 향상 및 자존감 향상 ·문화체험활동을 통한 가족 및 비장애친구와의 추억만들기
방 법	연1회, 5회기 프로그램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관내 문화체험장

2-7. 교수·학습 자료 및 교재교구,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 적

교수·학습 활동 수정, 보완 및 개선이 되도록 지원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맞는 교육 매체와 교육방법 제공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장 제 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가. 운영

- 1)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에 대한 지원
- 2) 멀티미디어 및 인터넷 교수·학습 자료 지원
- 3) 특수교육 교수·학습 자료 대여 및 특수교육관련 자료 지원
- 4) 특수교육 교재교구, 학습 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관리
- 5) 특수교육지원센터 자료실 및 연수 장소로 활용

나. 방침

- 1) 지원대상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은 장애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함
- 2) 교수학습 관련 자료 지원은 1회 1기기 1품목으로 함
- 3) 대여기간은 1년(대여일~2019년 2월 28일)으로 하고 연장신청 가능
- 4) 기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기구는 사용 방법에 알맞게 사용
- 5) 모든 교재·교구의 관리 및 지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나, 학교에 지원된 기간 동안은 학교에서 책임관리

다. 내용

- 1) 특수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부모용 도서, 전공 도서, 각종 유익한 비디오 자료, 장애 학생에 맞는 교재, 교구 등) 자료 제공
- 2)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 자료 대여
- 3) 각 학교별로 구비하기 어려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특수교육의 질 제고

3 진단·평가

3-1.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관리 및 상담

목 적

미취학 및 학령기 특수교육 대상자를 발견하여 조기에 특수교육관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특수교육대상 정보관리

- 1) 일시 : 연중
- 2) 실시 및 내용
 - 가) 장애영유아와 미취학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견 및 정보관리
 - 나) 영유아 및 학생에 대한 수시 선별검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 구축
 - 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일반유치원 배치 확대 및 학비지원에 대한 안내
 - 라) 학령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발견 및 정보관리

나. 특수교육 상담 지원

- 1) 일시 : 연중
- 2) 장소 : 특수교육지원센터
- 3) 실시 및 내용
 - 상담 신청 및 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전화신청, 내방 등을 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상 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 상담자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및 치료사 ▪ 장애영·유아 지원교사
상담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월~금)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내방 상담
상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관련 (진단·평가, 진로·직업교육, 부모교육, 교과교육, 통합교육, 치료지원, 방과후·방과중 활동, 교육적 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및 치료사 ▪ 장애영·유아 지원교사

3-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목 적

유·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진단 및 평가 지원 및 취학의무 면제자 및 유예자에 대한 진단 및 평가 후 학교 지정·배치 지원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제 14조 ④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운영

- 1) 장애영유아 및 학령기 장애아를 대상으로 실시
- 2)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에 대한 안내 및 그에 따른 제반 교육적 서비스 안내
- 3) 필요시 MOU 업무협약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보공유
- 4) 진단·평가 팀 운영

진단·평가팀 구성			
장학사	특수교사	치료사	외부위원
특수교육 담당장학사	초등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강사(초특) 중등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강사(유특)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임상심리사 특수교육관련 전문가

- 5) 관내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 사전 신청을 받아(진단·평가 의뢰) 진단 및 검사 실시, 전화 상담 및 면담 등

1. 진단·평가 신청

-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서식)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1부(서식)
- 제출처 : 특수교육지원센터
- 제출방법 : 인편제출 및 업무관리시스템



2. 진단·평가 접수



3. 진단·평가 의뢰



4. 진단·평가 실시



6. 진단·평가 결과보고



5. 진단·평가 운영회의

- 진단·평가팀 회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최종결정
-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작성 및 결과 보고

나. 월별계획

월별	내 용	비 고
3월	제1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6월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9월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고등학교 진학)	
	제3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진학)	
11월	제4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	

다. 평가 내용

장애영역	진단·평가 도구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 학습 기능 검사 2. 시력 검사 3. 시기능 검사 및 촉기능 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 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능 검사 2. 사회성숙도 검사 3. 적응행동 검사 4. 기초학습 검사 5. 운동능력 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응행동 검사 2. 성격진단 검사 3. 행동발달 평가 4. 학습준비도 검사
의사소통장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문 검사 2. 음운 검사 3. 언어발달 검사
학습장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능 검사 2. 기초학습기능 검사 3. 학습준비도 검사 4. 시지각발달 검사 5. 지각운동발달 검사 6. 시각운동 통합발달 검사

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4-1.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목 적

상시모니터링 기능 및 상시 관리체제 확립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도가니법)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목적

- 1) 상시모니터링 기능 및 상시 관리체제 확립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 폭력·성폭력 예방
가)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지원단 활동을 통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학교 폭력, 성폭력 미연에 방지**
나) 장애학생 중 더봄학생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위험 노출 방지
- 2)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성교육 및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 분위기 확산
- 3)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책무성 강화
- 4)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 5) 적극적인 예방 활동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교육 강화

나. 관련 근거

-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인권지원단 운영매뉴얼(2018. 교육부)
- 2) 2018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인권지원단 운영’

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주요역할

- 1)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해 활동
- 2) 장애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3) 장애학생의 범죄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기능 수행
가) 장애학생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제 확립
나) 학기 초 더봄학생 조사 및 관리

- 다) 매월 1회 지역 내 학교(특수학교, 일반학교)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정기 현장지원 실시
- 라) 효율적인 학교 점검 및 인권지원단 운영을 위한 협의회 연2회 이상 실시

4)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

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순	성명	소 속	직위 및 분야	주요역할	비고
1	이성기	군산교육지원청	센터장(교육지원과장)	· 상설모니터단 운영 총괄	단장
2	최상원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장학사)	· 장애학생 및 학부모 상담 · 통학, 안전 점검	내부위원
3	양은지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 장애학생 및 교사 상담 · 유관기관 연계 지원 방안 협의	내부위원
4	정춘옥	군산명화학교	교감	·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및 지원	외부위원
5	김은정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전문가	· 관심대상학생 보호 · 사안발생 시 조치 자문	외부위원
6	최선용	군산경찰서	여청수사팀	· 사안조사 및 자문	외부위원
7	김은실	군산경찰서	여청수사팀	· 사안조사 및 자문	외부위원
8	김소영	군산학부모연합회	학부모	· 학부모 상담 및 교육지원 · 열악한 환경 학생 지원	외부위원
9	하선영	군산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교사	· 장애학생 상담	내부위원

마.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 더봄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마음만지기』

사업담당자	양은지
-------	-----

가) 목적 : 더봄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긍정적 자아상 확립 및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5. ~ 2018. 7
대 상	더봄학생 중 희망자
내 용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10회기
방 법	전문강사 학교 파견하여 개인 및 그룹별 활동
장 소	해당 학급 교실(학교에서 별도의 장소 제공)

2)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

사업담당자		양은지		
연수방법	교육 내용	대 상	시 기	비 고
강사초빙	•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논의	특수교사	4월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10월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4-2.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성교육 강화

목 적

장애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학교 폭력과 성폭력 예방 등 인권보호, 안전지원,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강화

⇒ 근거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동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동법 제21조(통합교육)

가. 일반학급 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사업담당자		양은지		
가) 목적 : 장애학생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권교육을 통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기반 마련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4. ~ 2018. 11.			
대 상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초·중·고등학교			
내 용	인권의 개념 및 인권교육의 역할			
방 법	학교(학급)로 장애인권교육 전문 강사 파견			
장 소	각급학교			

나. 일반교사 대상 장애인권교육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사업담당자	양은지
-------	-----

가) 목적 : 장애인권교육을 통한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이해 증진 및 장애학생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4. ~ 2018. 11.
대 상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초·중·고등학교 일반교사
내 용	장애인권교육 및 인권 관련 사례
방 법	학교로 장애인권교육 전문 강사 파견
장 소	각급학교

다. 찾아가는 성교육 『건강한 우리들의 성』

사업담당자	양은지
-------	-----

가) 목적 : 장애학생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바람직한 성 태도 및 가치관 확립 과 성폭력 예방 포함,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장애학생의 대처 능력 향상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4. ~ 2018. 11.
대 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20개교
내 용	성교육 전문강사 학교 파견 학교당 5~10회기 강의
방 법	학교(학급)로 성교육 전문 강사 파견하여 성교육 및 예방교육
장 소	해당 학급 교실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5-1. 순회치료지원

목적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2차적 장애를 예방하고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②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일시 : 2018. 3. ~ 2019. 2.

나. 대상

- 1)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제공 절차에 의해 순회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치료지원 절차 준수)
- 2) 순회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취학을 유예한 특수교육대상자
 - 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시·군 바우처 사업) 및 타 기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예) 교육청 치료지원비로 외부 치료실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재활치료 바우처로 언어치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없음

다. 방침

-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규정된 치료지원 제공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
- 2) 의사의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 3) 치료지원 제공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 4) 치료지원비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지원예산 초과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라. 치료지원 진단·평가팀 구성

치료지원 진단·평가팀 구성		
장학사	특수교사	치료사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초등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강사(초특) 특수교육지원강사(유특) 중등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마. 순회치료지원 제공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활용한 치료지원

- 1) 지원방법 : 순회(소속학교, 가정)치료, 센터 내방치료
- 2) 지원시간 : 학생당 주2시간 이상
- 3) 지원대상 : 순회치료지원계획에 따름

구 분	제 공 방 법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센터치료사를 활용한 내방 및 순회치료지원 실시
각급학교/시설/가정(순회) 활용	치료사가 학생의 학교, 시설,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지원 제공

바. 기타 사항은 ‘2018년 치료지원 운영 계획’ 참조

5-2.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목 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화교육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성과 제고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1조(통합교육), 동법 제28조(관련서비스), 25조(보조인력) ②교육감 또는 교육자는 보조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운영

- 1)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현장중심 연수 실시
- 2) 장소 : 군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

나. 세부 일정 및 주제

연수방법	교육 내용	시 기	비 고
강사초청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례중심, 현장 중심 연수 실시 • 강사 초빙을 통한 2일 집합연수	2018. 7.	군산교육지원청 3층 회의실

5-3.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목 적

장애인의 교육 및 양육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을 인식시키고,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지원망과 관계망을 통하여 가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4장 제 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5-3-1. 특수교육대상학생 부모교육

사업담당자

임혜란(유) / 양은지·박진형(초·중·고)

-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자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녀의 긍정적 행동 지원 및 관계 증진 강화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4.	2018.5.	2018.5.	2018.9.	2018.10.
대 상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장애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2회기 예정)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주 제	부모 인성키움	칠보공예	우리 아이와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	우리아이 바른먹거리	과일청만들기
내 용	전문이론강의	소양교육	전문이론강의		소양교육
방 법	전문강사 내방 프로그램 운영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및 교육활동실				

5-3-2.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썬플라워중창단 『온누리 노래교실』 운영

사업담당자	김은영
-------	-----

가. 목적 : 부모 자신의 내적 통제 및 자기인식을 증진시키며 사고 능력을 배양하여 자신은 물론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 도모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3. ~ 2018. 12.
대 상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내 용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합창 및 음악활동
방 법	주 1회 노래지도 강사 1인, 반주자 1인의 강습 및 연습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5-3-3. 행복한 가정 만들기 『똑딱똑딱 목공소』 운영

사업담당자	김은영
-------	-----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형제자매, 학부모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간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며 내면의 부정적 자아감 극복 및 문제 행동 감소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4. ~ 6. / 2018. 9. ~ 11.
대 상	초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정
내 용	목공프로그램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공예실

5-3-4. 『아름드리 가족캠프』 운영

사업담당자	김은영
-------	-----

가.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 간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다른 가족과의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부여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10.(예정)
대 상	특수교육대상자 18가정
내 용	학생프로그램, 부모프로그램, 가족나들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방 법	1박2일 캠프(연1회)
장 소	미정

5-3-5. 장애유아 교육 및 가족지원 『엄마랑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담당자	임혜란
-------	-----

가. 목적 : 가족 간 애착감 강화 및 정서적 안정, 자기표현의 기회 제공 및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창의성 향상 및 소근육 발달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2018. 5. ~ 2018. 7. / 2018. 9. ~ 2018. 11. 주 1회, 15:30시 ~ 16:30(각 10회기씩)
대 상	공사립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특수교육대상 유아 및 장애위험 유아와 학부모(엄마)
내 용	엄마랑 함께하는 레크 체육, 카혼 연주
참가인원	상·하반기 각 6가정(장애유아 1명과 학부모(엄마) 1명 1가정) 참여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교육활동실

5-3-6. 방학 중(계절제) 형제·자매 프로그램 『가가호호』 운영

사업담당자	박진형
-------	-----

가. 목적 : 형제자매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이해하고 상호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도모하며, 참여학생들간의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성 증진과 다양한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

나. 운영 및 실시

기 간	여름방학 : 2018. 7. 30.(월) ~ 2018. 8. 3.(금) 5일간
대 상	·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형제·자매 10가정(총 20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중 희망자
내 용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비장애 형제·자매 체험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의 이론 및 소양교육
장 소	미정

5-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및 진학지원

목 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특성에 맞춘 유·초·중학교의 정보 제공의 장 마련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5-4-1. 장애유아 및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적응 지원

사업담당자	임혜란
-------	-----

가. 목적

-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습관 및 가치 형성
- 바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향후 학교생활 적응능력 함양

나. 운영 및 실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예비학교 『튼튼교실』	기 간	2018. 2. 21. ~ 2. 23.
	대 상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내 용	학생 학교생활 적응교육 및 부모교육
	장 소	군산동초등학교 특수학급 2실
초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적응지원 학부모 간담회	기 간	2018. 4.
	대 상	초등학교 1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내 용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 적응 지원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학부모 연수	기 간	2018. 12.
	대 상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유아 학부모
	내 용	우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학교생활 안내>
	장 소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다목적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적응지원 학교 견학	기 간	2018. 12. ~ 2019. 1.
	대 상	2019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유아 및 학부모
	내 용	학생 학교생활 적응교육 및 부모 상담
	장 소	해당 초등학교

5-4-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 및 진학지원을 위한 설명회

가. 운영

- 1)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의 유·초·중 입학에 있어서의 취학 및 진학의 정보 획득
-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학교 배치 안내

나. 세부추진계획

- 1) 대상 : 2019학년도 취학 및 진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 유·초·중학교의 관심 있는 학부모 및 특수교육 담당교원
- 2) 시기 : 2018. 6.

3) 장소 :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 및 교육활동실

4) 세부일정

구분	일정		내용	담당
설명회	1부 설명회	60분	* 2019학년도 취학 및 진학 설명회 - 취학 및 진학 절차 및 지원내용 안내 -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안내 및 발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용 안내	관내 특수학급 교사
	2부 개별 상담	설명회 이후~	각 학교(급)별 담당교사 부스 운영 개별상담	해당 학급 교사

5-5. 홈페이지 관리와 자료 탑재 및 홍보

목적

특수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홍보물 발간, 상담활동 운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및 특수교육 서비스 확대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장 제 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독자적 홈페이지 운영

- 1) 기간 : 2018. 1. ~ 2018. 12.
- 2) 홍보 URL : 특수교육지원센터 (<http://jbkspecial.jbgse.kr/>)
- 3) 특수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서비스 확대
- 4) 군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
- 5) 특수교육 소식 전달, 홍보, 이해의 장으로 활용
- 6) 자료실을 통해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환

나. 홍보자료 제작

- 1)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홍보활동 : 자료 탑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및 이용에 대한 홍보
-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물 제작·배부
 - 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 내용과 지원내용이 담긴 홍보자료 및 물품을 제작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비치
 - 나) 유·초·중학교 및 지역기관 등에 홍보물 배포
- 3) 보도기관 구축·활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사 관련 보도 자료를 이용한 홍보

다. 교육지원청 행사 및 기관방문을 통한 홍보활동

시 기	장 소	방법 및 내용
2018.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청 및 주민센터 •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물 발송 • 유관기관 방문 홍보
2018.10.	군산교육지원청 주관 행사	지원센터 홍보물(리플렛, 기념품 등) 배부 및 장애체험부스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홍보

6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

목적

장애유형과 정도,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일반학교에 배치된 지체장애 학생 지원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가. 목적

- 1) 일반학교에 배치된 지체장애학생의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 강화
- 2)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전라북도 지역의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체장애학생의 개별화, 특성화된 지원
- 3) 지체장애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의 지원으로 교육기회 증진

나. 운영방법 및 활동내용

- 1) 도내 일반학교 배치 지체장애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조사
- 2) 교육현장의 수요 요구에 의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지원
- 3) 지체장애 이해를 위한 연수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식개선의 중요성과 공감대 형성
- 4) 지체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 파악,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

다.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 지원 선정 및 구입절차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도내 각 지역교육청으로 수요조사 공문을 발송하여 수요조사 및 실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파악 (군산은 각 학교로 공문 발송)	4월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및 도내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및 교재교구에 관한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원할 보조공학기기 선정 후 군산교육지원청으로 선정 결과에 관한 서류 및 신청서 제출	4월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해당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입찰 및 구입 진행	5월
↓		
지체장애 거점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비치 및 대여	5월~12월

Ⅲ. 월별 업무추진 계획

사업명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장기 프로그램	순회교육														
	진단평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장애인권교육														
	성교육프로그램 『건강한 우리들의 성』														
	온누리 노래교실														
	『꿈드림』 문화예술동아리														
	찾아가는 교육과정지원 『책소리 북소리』														
	유치원 통합교육지원 『생크림』														
	행복한 가정 만들기 『똑딱똑딱 목공소』														
	재활승마프로그램 『말 달리자!』														
	뉴스포츠프로그램 『도전! 튼튼교실』														
	『마음마다 걸음마다 사진마다』 사진교실														
	영유아 프로그램 『엄마랑 놀이터』														
	교사연수														

사업명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단기 프로그램	학부모 연수 『소양교육, 영유아 학부모 연수』				■	■				■	■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							■					
	문화공연지원 『알라뷰_I LOVE VIEW』							■					■
	방학 중 형제·자매 프로그램 『가가호호』								■				
	아름드리 가족캠프										■		
	졸업예정자 전환교육 『너DO 나DO 날개달자』												■

2018년도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2018. 2.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우) 54080 전북 군산시 조촌로 22

전화 063)451-7955~7 팩스 063)451-7994

<http://job.jbgs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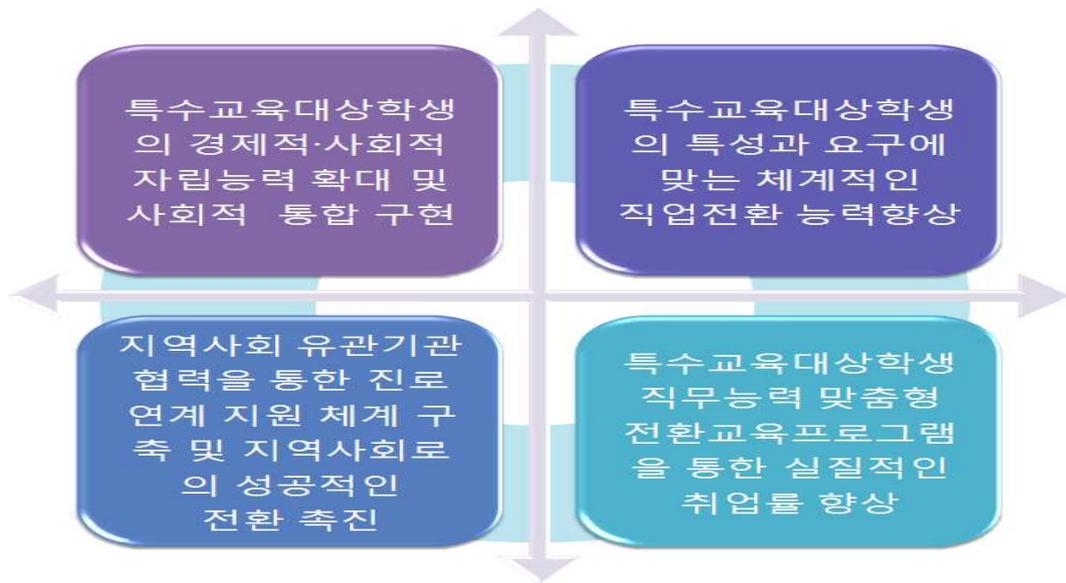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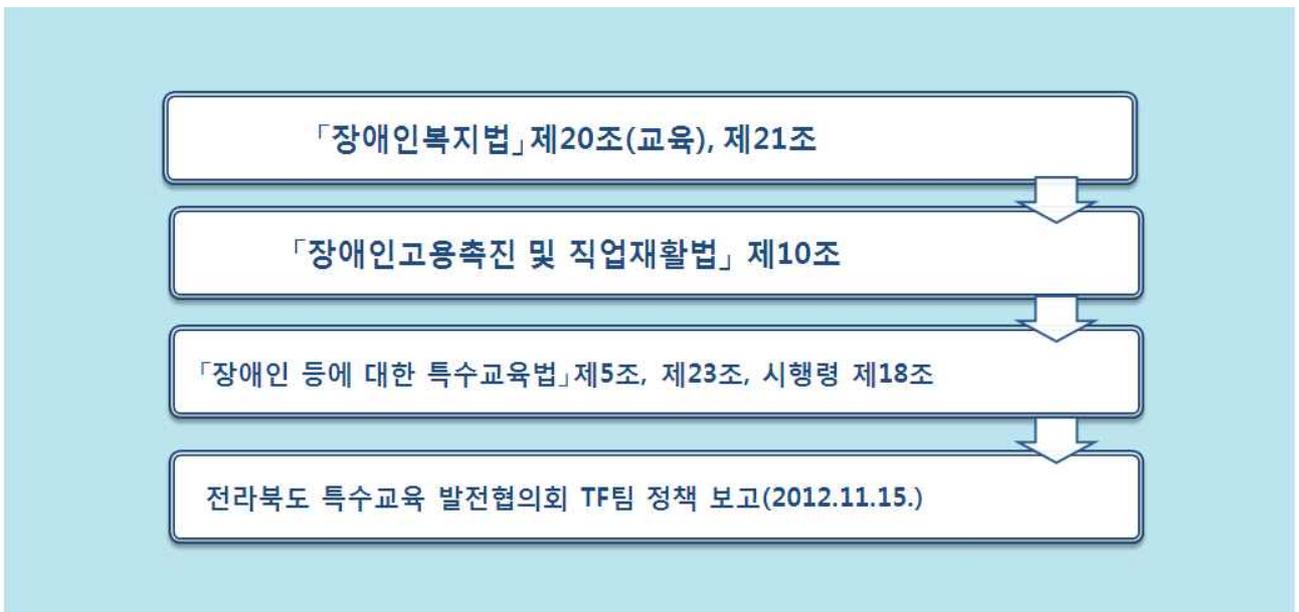
I.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개요	97
1. 운영 목적	97
2. 운영 근거	97
3. 운영 지원체계	98
4. 운영 현황	98
II. 운영 내용	102
1. 학생 지원 프로그램	102
1-1.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102
1-2.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	104
1-3.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105
1-4. 직업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106
1-5. 장애인직업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107
1-6. 사업체 현장 실습	108
1-7. 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 프로그램	109
1-8. 순회교육	109
1-9. 지역사회 프로그램	110
1-10. 특수학급 차량 운행 지원	113
1-11. 센터 시설 대여 프로그램	114
2. 특수교사 연수 지원	115
3. 학부모 연수 지원	116
III. 월별 업무추진 계획	117

I.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개요

1 운영 목적



2 운영 근거



3 운영 지원체계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권역

- 김제, 부안, 고창, 정읍

군산권역 운영지원 업무

- 장애학생 직업관련평가 지원(담당인력 및 평가도구 지원)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직업관련 연수 지원
- 직업전환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시설 이용 및 직업프로그램 체험

4 운영 현황

가.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현황

구분	사무실	상담실	직업평가실	직업훈련실	카페테리아	자료실	다목적실	계
	1실	1실	2실	5실	1실	2실	1실 공용	
활용	직업전환 센터 업무	상담 업무	직업평가 직업준비도 및 직업능력검사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바리스타 교육 외식서비스 실습	교수-학습 자료 및 기자재 보관	교육 및 연수 활동	13

나.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및 담당업무

직 위	인 원	업 무	비 고
센터장 (교육지원과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총괄 	☎ 450-2612
부센터장 (장학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기획 및 운영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및 복무관리 	☎ 450-2642
팀장 (중등 특수교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반업무 ■ 순회교육 ■ 중·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 전문가 자격증반 운영 ■ 중·고등학교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교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센터 시설 대여 잡데이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지원·관리 및 현장 실습 운영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반 운영 - 맞춤형 사업체 현장 실습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 구축 및 관리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관리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및 복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실무사 근무 및 운영 관리 - 강사 근무 및 운영 관리 	☎ 451-7955
공통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및 직업상담 ■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프로그램 강사 섭외 및 관리 ■ 교육 프로그램 상시 점검 및 자료 관리 ■ 교육 프로그램 자료 제작 및 만족도 조사 ■ 순회교육 지원 ■ 기타 센터(특수센터포함) 업무 및 행사 지원 	

직 위	인 원	업 무	비 고
중등 특수교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 장애인직업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 사업체 현장실습 운영 지원 ■ 카페테리아 관리 및 물품 구입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이용 관련 업무 운영 	☎ 451-7956
중등 특수교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차량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찾아가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초등학교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부모 연수 계획 및 운영 ■ 자원봉사 업무 ■ 센터 홈페이지 및 정보 관리 	☎ 451-7957
중등 특수교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 중·고등학교 찾아가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교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중·고등학교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특수교사 연수 계획 및 운영 ■ 주간 및 월간 업무 계획 취합 및 일정 관리 ■ 소모품·교재교구 비품 관리 	
주 무 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교육 프로그램 버스 운행 및 점검 ■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차량 운행 지원 ■ 센터 시설 점검 및 관리 	☎ 070-4741-7138
특수행정실무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시설 점검 및 관리 ■ 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카페테리아 관리 지원 	☎ 070-4741-7592
직무지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체 현장실습 학생 직무 지원 ■ 버스 노선 및 승하차 관리 	

다. 2018학년도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추진사업

추진 사업	추진 내용
진로상담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담당교사, 학생 진로상담 활동 ■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준비도 및 직업흥미검사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능력검사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초 자료 구축(진로연계파일 등)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급별 자립생활 교육 운영 ■ 개인위생교육(자기관리교육), 체력증진교육, 작물재배(원예), 정리·수납 교육, 식생활 교육 등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급별 진로·직업 교육 운영 ■ 도예, 요리, 목공, 컴퓨터 활용 교육 등
직업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즈공예, 바리스타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장애인 직업인식개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에 대한 인식개선 강연 및 직업체험부스 운영
사업체 현장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기관 섭외 및 담당자 협의체 구축 ■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운영 ■ 대상학생 사전교육 및 현장 직무 지도 관리 ■ 맞춤형 현장 직무 실습 및 추수 지도
중·고 방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프로그램 운영 ■ 여가 활용 교육(미술, 음악 등) 실시
순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학생의 순회교육 지원
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진로·직업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의 특수교육 관련 이해 증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유지 관리 ■ 홈페이지 자료 탑재 및 홍보
특수학급 차량 운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 단위의 현장체험학습, 직업탐색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 지원
센터 시설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직업훈련실 장소 및 기자재 제공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Ⅱ. 운영내용

1. 학생 지원 프로그램

1-1.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가. 진로상담

목 적

진로상담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직업전환교육의 방향을 결정

1) 운영방침

- 가) 취업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
- 나) 상담 자료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나 취업연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다) 다양한 방법(센터 내방, 학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담 실시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연 중
- 나) 장소 :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 교사
- 라) 내용 : 진로상담의 기초이며 학생과 부모의 면담으로, 장애특성 및 강점과 약점, 학습 능력을 파악하여 진로프로파일을 구축함

나. 직업평가

목 적

진로연계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상담 및 면접, 평가 등을 통해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에게 맞는 직업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진로를 준비

1) 운영방침

- 가) 직업평가를 희망하는 학생이 센터에 내방하여 평가 실시
- 나) 담당교사 요청 시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ITP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다) 학급교사 및 학부모상담을 함께 실시
- 라) 각 학생의 장애특성에 맞는 검사 도구를 선택하여 평가

- 마) 연초에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연중 프로그램 진행 시 평가가 필요할 경우 수시 진행
- 바) 상담 및 평가 자료는 진로프로파일을 구축하여 학생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시 활용
- 사) 직업평가팀(특수교사, 직업재활사)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협의를 통해 학생 평가 소견서 작성 및 자료 구축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18. 3. ~ 2018. 12.
- 나) 장소 :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라) 내용 : 직업준비에 관한 영역별 평가 및 직업적 적성을 파악하여 진로상담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마) 검사도구 : 상담지, 그림직업흥미검사, 지역사회적응검사(CIS-A), 직업적성 및 인성검사, Purdue pegboard, 직업준비도 검사(ERS), Work Activity 작업 표본 평가, Work Activity 모의 작업평가, MDS 등

◎ 센터 보유 평가 도구 목록

영역	평가 도구	평가 목적	비고
상담 및 면접	상담지	학생 기초조사 및 희망진로 파악	
심리평가	직업흥미검사	흥미 검사	
신체평가	퍼듀팩보드 (Purdue Pegboard)	손가락, 손 팔의 동작과 미세한 손끝 민첩성 평가	
	K-MAND	신경운동검사	
	퍼듀팩보드 테스트	손가락, 손 팔의 동작과 미세한 손끝 민첩성 평가	
	미네소타 손 능숙도 테스트	눈-손 협응 능력과 팔과 손의 민첩성 평가	
	오코너 손가락 민첩성 검사도구	손의 빠른 조작능력(작은 물건을 집어 올려 정확히 가져다 놓는 능력) 평가	
	그루브드 팩보드	시각-운동 협응 능력 측정	
	Work Activity I, II, III	변별, 조립, 포장 영역의 작업 기능 평가 및 훈련	
적응능력	지역사회적응검사 (CIS-A)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생활, 사회자립, 직업능력 등 포괄적인 적응기술 수준 평가	

1-2.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

목 적

- 학생의 자립에 필수적인 일상생활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기회 제공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일상생활 기술의 단계적 습득 지원
- 자기결정기술 훈련을 통해 구체적인 자립생활의 실현 계획과 목표설정 토대 마련

1) 운영방침

- 가) 각 학교의 소요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 요구 조사
- 나) 각 학교별 신청 접수 이후 일정을 조정하여 통보
- 다) 센터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 이용
- 라)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운영 점검 실시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상반기(1학기) 운영
 - 초 :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오전(40분 수업)
 - 중 : 매주 월, 화요일 오후(45분 수업)
 - 고 : 매주 수, 목요일 오후(50분 수업)
- 나) 장소 :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라) 내용 :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자립생활 교육 실시

학교 급	교육과정 및 내용
초	개인위생교육(청결 관리, 의복 관리, 식사위생 등)
	원예교육(쌈 채소 심기, 텃밭 가꾸기, 꽃보기식물 심기, 수경식물 심기 등)
중·고	자기관리 교육(개인 위생, 이미지 관리, 이미지 메이킹 등)
	식생활 교육(밥 짓기, 국끓이기, 간단한 반찬 만들기, 상차림 및 뒷정리 등)

(* 단, 사정상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운영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1-3.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목 적

- 여러 분야의 직업 탐구 활동을 통해 직업에 대한 흥미 및 호기심 고취
-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지원
- 지역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 기술 습득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지원 및 취업 유도

1) 운영방침

- 가) 각 학교의 소요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 요구 조사
- 나) 각 학교별 신청 접수 이후 일정을 조정하여 통보
- 다) 센터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 이용
- 라)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운영 점검 실시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하반기(2학기) 운영
 - 초 :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오전(40분 수업)
 - 중 : 매주 월, 화요일 오후(45분 수업)
 - 고 : 매주 수, 목요일 오후(50분 수업)
- 나) 장소 :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라) 내용 : 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급별 진로·직업 교육 실시

학교 급	교육과정 및 내용
초	도예(흙과 친해지기, 판을 이용한 표현하기, 나선문 말아 보기 등)
	원예(쌈 채소 심기, 텃밭 가꾸기, 꽃보기식물 심기, 수경식물 심기 등)
중·고	작물재배(다양한 작물재배알기, 농산물·식물 기르기 등)
	요리(조리도구 사용법 알기, 재료 손질법 알기, 한접시 요리하기 등)
	목공(안전교육 및 공구 사용법 알기, 목공 공구 만들기 등)
	컴퓨터 활용 교육(기초 문서 작성, 기본적인 컴퓨터 실기 교육 등)

(* 단, 사정상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운영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1-4. 직업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목 적

- 진로.직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진로개발역량 함양
- 관련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 및 사회적 기술 함양

1) 운영방침

- 가) 각 학교의 소요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 요구 조사
- 나) 각 학교별 신청 접수 이후 일정을 조정하여 통보
- 다) 센터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 이용
- 라)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운영 점검 실시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18. 4. ~ 12.
- 나) 장소 :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비즈공예 과정 : 관내 고2,3 특수교육대상학생
 - 바리스타 과정 : 관내 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 라) 내용 : 비즈공예(1년과정), 바리스타 과정(1학기/2학기 과정)
 - 비즈공예 과정 : 관내 고2,3 특수교육대상학생

프로그램	세부내용
응용 프로그램 과정(초기 4주)	참여 학생들이 1년 동안 자격증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기간으로, 4가지 작품 만들기를 통해 진행됨.
크리스탈 베스트 클래스 과정	크리스탈 공예 입문 과정으로, 기존의 공예와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작품(5작품)들을 통해,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기법과 강의를 통해 이루어짐.
크리스탈 엑스퍼트 클래스 과정	크리스탈 공예 전문가 과정(7작품)으로, 베스트 클래스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응용 프로그램 과정	비즈공예, 크리스탈 주얼리 과정을 충분히 연습하여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재료 및 기법들을 16가지 작품을 통해 습득하는 교육과정.
※ 자격증 취득 절차: 베스트 클래스→엑스퍼트 클래스→교육연수 및 시험→자격증 취득	

- 바리스타 과정 : 관내 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프로그램	세부내용
기초반(1학기)	커피의 역사, 커피 식물학, 에스프레소 원리/실습 및 추출, 우유 거품 만들기, 바닐라라떼, 카페모카, 아이스 초코 등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일정 시간 이수 후에 3급 자격증 취득.
심화반(2학기)	기초반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좀 더 깊이 있는 실기 과정 준비를 통해 2급 자격증 취득.(복지카드 있는 경우 필기 면제)

1-5. 장애인직업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꿈나르미 직업버스」

목 적

장애인 직업 활동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관내 초등학교 통합학급을 순회하며 실시하여 장애학생은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꿈 함양을, 비장애학생들은 장애인의 직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개선 교육)

1) 운영방침

- 가) 관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에게는 능동적인 직업 인식과 탐색의 기회를, 비장애 학생들에게는 장애인의 직업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 나) 신청학교에 센터차량이 방문해 대상학생을 데리고 직업전환센터로 이동하여 프로그램 진행
- 다) 학기 초 선정된 각 학교에 신청공문을 발송하여 방문 일정 수립하고, 센터와 학교담당자 간 협의를 통하여 프로그램 준비 사항 파악
- 라) 통합학교의 장애인식 정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인식 정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내용 및 실시 규모를 조정
- 마)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운영 점검 실시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18.5. ~ 2018.11.(연 4회)
- 나) 장소 :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 중 희망학교
 - 대상학교 선정 기준

- 1순위 : 과거 꿈나르미 직업버스 신청학교 중 프로그램 미실시교
- 2순위 :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많은 학교
- 3순위 : 저학년 우선 선정

라) 내용

- 직업인식개선교육 : 현장사례중심 멀티미디어 및 시각자료를 활용한 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 직업실무체험부스 : 우편분류, 바리스타, 떡 만들기, 원예사 등 실제 장애인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무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체험활동 참여

1-6. 사업체 현장 실습 「스타트 잡스(Start-Jobs)」

목 적

- 직무분석을 토대로 개인에게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여 직무수행능력 증진
- 현장배치 훈련을 통해 고용가능성 향상

1) 운영방침

- 가) 산업체 현장에서 직무를 체험해 봄으로써 실제 직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적응능력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
- 나)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
- 다)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학생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18. 9. ~ 2018. 12.(2학기)
- 나) 대상 :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 다) 장소 및 내용

순	업 종	기 관 명	내 용
1	의료기관	00의료원	간병 업무 보조
2	세탁업체	00린넨	세탁물 처리 및 정리 보조
3	대형마트	00마트	카트 정리 및 물품대 정리
4	편의점	00편의점	상품 진열 및 계산 보조

(* 단, 사정상 프로그램 일정 및 기관은 변동 될 수 있음.)

1-7. 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방학프로그램

목 적

- 방학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생활에 활력 부여
- 방학 기간 동안 개인의 흥미와 적성이 직업적 성향에 맞도록 준비하는 자기계발의 기회 마련

1) 운영방침

- 가) 방학 기간 동안 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
- 나) 교육장소와 가정으로의 이동 계획은 가정에서 별도로 수립
- 다) 센터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 이용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7~8월 방학 중 1주간 운영(50분 수업)
- 나) 장소 :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라) 내용 :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예체능 교육(미술, 음악, 체육 활동 등) 실시

1-8. 순회교육

목 적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교육욕구에 따른 학습권 보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조(의무교육 등), 동법 제 25조(순회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1) 운영방침

-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학생을 선정
- 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학교 담임교사와 협의 후 순회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
- 다)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르되 대상학생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 거주지, 학부모의 의견 등이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개별화교육 실시
- 라) 교과학습 발달상황 및 기타 종합 의견은 순회학급 담임교사가 제시 또는 평가한 내용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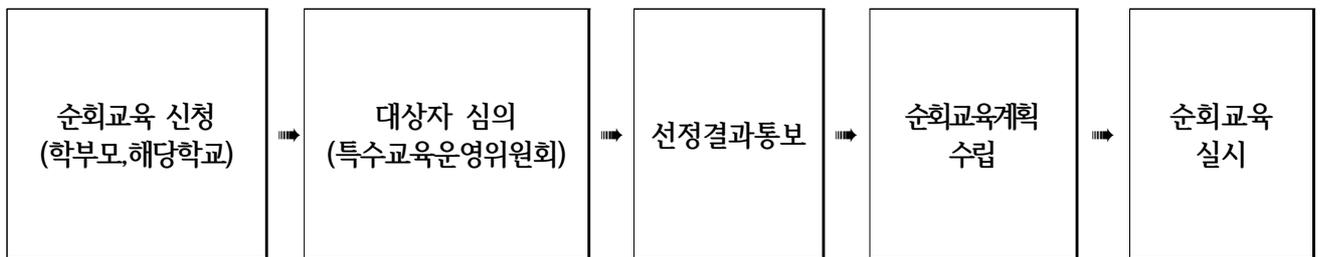
마)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학생 지원

-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2) 순회교육대상자 선정 방법

가) 선정 방법: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정

나) 선정 절차



다) 순회교육 중단

- 재택 및 시설 순회교육 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 중 수업일수의 2/3이상의 출석이 가능해진 경우는 순회교육을 중단 요청 시 중단할 수 있음.
- 신청학생 보호자의 중단 요구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회교육을 중단할 수 있음.

1-9. 지역사회 프로그램

가. 지역사회 연계

목 적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기업체 발굴을 통하여 장애학생들의 현장훈련 및 취업 기회 증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③**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 가)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사업체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나) 유관기관과의 직업전환교육 업무협약 체결
- 다) 기관간의 역할에 따른 직업교육 연계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18. 3. ~ 2018. 12.(연중)
- 나) 대상 : 지역사회 유관기관
- 다) 내용
 -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회 실시
 - 정기적 유관기관 방문 및 협의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사업 연계

나. 센터 홍보 활동

목 적

- 전환교육 중요성 홍보 및 지역사회 내 통합 촉진
- 특수교육대상학생 고용 홍보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1) 운영방침

- 가)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물 유관기관에 배부
- 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다) 지역사회 홍보를 통한 개별, 단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18. 3. ~ 2018. 12.(연중)
- 나) 내용
 -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홍보
 -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관련 홍보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현황

구 분	기관 및 기업명	연계 내용	연락처
유관기관 및 단체	전북 장애인고용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환 지원고용 연계 ■ 취업대상 학생 진단평가 ■ 구직신청, 취업알선, 기업체연계 등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063)240-2412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재활복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사업 연계 	063)454-3174
	군산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환 지원고용 연계 ■ 협력기관 체결을 통한 프로그램 공유 및 연계 	063)466-7981
	군산우체국 군산교육문화회관 군산의료원 등 관내 관공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환 지원고용 연계 ■ 특수교육연계형 복지일자리 직무 배치 ■ 현장실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평가, 사전훈련 후 선정 배치 - 분류작업등 실습 및 직무지도 - 학령기 진로·직업교육 및 진로에 대한 방안 모색 	063)450-6127 063)450-3213 063)472-5000
	군산시장장애인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련 행사 추진 	063)463-1180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유)아리울명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탐방 및 실습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를 통한 수준별 탐방 - 개별평가, 사전훈련 후 선정 배치 - 현장실습 과정에서 심사평가 후 취업으로 연계 	063)453-2724
	(주)김장독		063)453-0807
	(주)농민농산		063)453-8082
	아주실업		063)464-9877
	이마트(군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및 직업체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조립 등 실습

1-10. 특수학급 차량 운행 지원 「버스 타GO!」

목 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과 학급 및 학교 실정에 맞는 현장체험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체험활동 지원
- 차량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학생 수송으로 교육의 효과 상승

1) 운영방침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학 학교의 신청을 받아 차량지원이 이뤄지도록 진행.
- 나) 학기 중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 지원.
- 다) 운영가능지역은 전북 도내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간 범위 내 타시도 이용 가능.
- 라) 한 학기별 학교급마다 1회씩 지원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기간 내 매주 금요일 09:00~16:00 이용을 원칙으로 함.
- 마) 단, 부득이한 사정(프로그램 운영 등) 발생 시 이용일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최소 10명 이상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10명 미만인 경우 근처 학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사) 이용 희망일이 중복될 경우 신청 인원이 많은 학교를 우선 지원함.
- 아) 이용 일주일 전 이용 인원 및 현장체험 계획서 공문으로 제출.
- 자) 차량지원만 가능하므로 주차비 및 통행료는 해당학교에서 부담.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1학기 신청기간 : 2018. 4. 2.(월) ~ 4. 6.(금)
 - 1학기 운영기간 : 2018. 4. 13.(금) ~ 6. 29.(금) (총12회)
 - 2학기 신청기간 : 2018. 8. 27.(월) ~ 8. 31.(금)
 - 2학기 운영기간 : 2018. 9.1.(금) ~ 11.30.(금) (총13회)
- 나)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 다) 신청방법 : 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군산교육지원청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차량이용 계획서 1부

1-11. 센터 시설 대여 「잡데이(JOB DAY)」

목 적

각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제한적인 환경으로 진로·직업교육의 실시가 어려운 특수학급에 센터의 장소 및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운영방침

- 가) 특수학급별 특성 있는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프로그램 계획(예산포함)은 각 특수학급에서 수립
- 나)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훈련실 장소와 기자재만 제공
- 다) 프로그램 실시 최소 2주 전에 공문으로 신청서 제출
- 라) 운영권역지역에서 직업전환센터 실 이용 요청 시 공문으로 신청 받아 대여할 수 있음.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2018. 4. ~ 2018. 12.(매주 금요일, 방학 제외)
- 나) 장소 :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통합학급 담당자
 - 군산권역(고창, 김제, 부안, 정읍)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통합학급 담당자
- 라) 신청방법 : 센터 담당자와 협의 후 군산교육지원청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프로그램 계획서 1부

◎ 대여 장소 안내

순	실 명	사 진	설치기자재	용 도
1	직업훈련실1 (생활요리실)		전기렌지 8개, 조리대 8개, 개수대 8개	요리실습이나 기타 실습실로 활용 가능
2	직업훈련실2 (손기능작업훈련실)		책상 4개, 의자 8개	손작업기능 훈련실로 활용, 기타 실습실 등으로 활용 가능
3	직업훈련실3 (정보교육실)		컴퓨터 8대, 의자 및 책상 8개	컴퓨터 교육이나 인터넷 활용 수업 가능
4	직업훈련실4 (공예실)		책상 8개, 의자 10개	공예 및 기타 실습실로 활용
5	직업훈련실5 (직무체험실)		바닥 매트	대근육 활동이나 린넨체험실 등으로 활용
6	카페테리아 꿈터		원형 책상 4개, 의자 12개, 커피머신	바리스타 교육 및 기타 외식서비스 교육실 등으로 활용 가능

2. 특수교사 연수 지원

목 적

-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로·직업 교육 관련 연수를 통하여 특수교사의 역량 강화
-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8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 가) 특수교사 연수 개설 관련 수요조사
- 나) 특수교사의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
- 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연수 내용을 선정하여 추진
- 라) 연수 종료 시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운영 점검 실시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5월, 11월 2회 운영
- 나) 장소 :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 라) 내용 : 이론 및 실기 연수

회 기	기간	형 태	주제 및 내용
1	2018. 5.	이론	특수학급에서 지원해야 하는 진로·직업교육의 방향 및 교육의 실제
2	2018. 11.	실습	진로·직업교육 관련 실기 연수

(* 단, 사정상 연수 주제 및 운영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3. 학부모 연수 지원

목 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졸업 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
- 기관·사업체 연계 등을 통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실질적 취업 준비 기틀 마련
-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자녀의 진로 및 취업교육에 필요한 기초 소양의 지속적 함양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4장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운영방침

- 가)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 나) 진로 및 취업정보 관련 학부모 상담 실시
- 다) 다양한 교육 제공을 통한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

2) 세부운영계획

- 가) 기간 : 6월, 7월, 11월, 12월 4회기 운영
- 나) 장소 :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 다) 대상 :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
- 라) 내용 : 이론 및 실기 연수

회 기	기간	형 태	주제 및 내용
1	2018. 6.	이론	- 자녀의 성공적 사회 전환 방향 및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2	2018. 7.	실습	- 가정에서 필요한 직업 준비 교육
3	2018. 11.	이론	- 감정코칭, 웃음치료
4	2018. 12.	실습	- 힐링푸드테라피

(* 단, 사정상 연수 주제 및 운영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Ⅲ. 월별 업무추진 계획

사업명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진로상담 및 평가			■										
자립생활 교육 프로그램			■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				
직업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										
장애인직업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				■				
사업체 현장 실습									■				
중·고 방학 프로그램								■					
순회교육			■						■				
취업지원 및 추수지도			■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										
특수학급 차량 운행 지원			■						■				
센터 시설 대여			■										
교사 연수					■						■		
학부모 연수						■					■		

□ 부 록

1. 군산 특수교육기관 현황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양식(신규 특수교육대상자)
3.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양식(기존 특수교육대상자)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신청서 양식
5. 특수교육대상자 유예 또는 면제 신청서 양식
6. 건강장애 선정·배치 신청서 양식
7. 순회교육 신청서
8. 순회교육 취소 신청서 양식
9. 개별화교육지원팀 조직 및 운영
10. 특수학급 미설치교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11. 특수학급 설치교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12. 특수교육지도사 업무 일지 양식
13. 특수교육지도사 활용 계획 양식
14. 치료지원대상자 및 순회치료지원 신청서 양식
15. 현장실습 관련 업무 양식

부록의 구분·구별 내용 정리를 위해 각 양식에 임의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1. 군산 특수교육기관 현황

순	기관명			주소	전화		
1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조촌로 22(조촌동 757)	450-2622		
2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451-7950~3		
3	군산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451-7955~8		
4	특수학교	공립	군산명화학교	상나운1길 37	462-2195		
5	유치원 (1개교2학급)	공립	군산중앙유치원(2학급)	중앙로 91	446-9711		
6	초등학교 (26개교 30학급)	공립	군산부설초	팔마로 110	442-2188		
7			군산구암초(2학급)	경암동 3길 114	445-2405		
8			군산나운초	신설로 50	465-8101		
9			군산남초(2학급)	삼학7길 4	462-2521		
10			군산동초(2학급)	번영로 239	452-3732		
11			군산미성초	칠성2길 27	464-7545		
12			군산산북초	산북동 원산북 2길 70	465-2414		
13			군산서초	중앙로 536	445-3664		
14			군산신흥초	백토로 129	467-2272		
15			군산아리울초	수송동 830-2	440-8880		
16			군산월명초	청소년회관로 51	462-9247		
17			군산중앙초	중앙로 179	445-1735		
18			군산초	중앙로 170	442-6578		
19			군산풍문초	풍문 1길 32	445-2575		
20			군산흥남초	문화동 9길 18	466-0018		
21			군산문화초	문화안길 51	465-0908		
22			나포초	나포면 옥곤리 261	453-1006		
23			당북초(2학급)	백석로 42	462-8983		
24			문창초	공항로 520	466-3008		
25			새만금초	요죽5길 42	469-7611		
26			소룡초	소룡초교 2길 77	468-9103		
27			옥구초	옥구로 50	464-9596		
28			옥봉초	옥봉초교길 145	471-2005		
29			옥산초	옥산면 여로 2길 40	464-4015		
30			해성초	산북동 옥성남길 21번	466-2775		
31			회현초	회현면 회현로 139	466-5054		
32			중학교 (9개교10학급)	공립	군산산북중	동아로 109	468-0222~3
33					군산서흥중(2학급)	흥남로 118	462-0091
34					군산월명중	설림5길 90	462-3334
35					군산자양중	우치산3길 40	464-9372
36					군산중	군중길 18	465-5925
37	군산진포중	진포3길 66번지			462-3206		
38	나포중	나포면 등동1길 6-5			453-1744		
39	회현중	회현면 대위로 426			466-5147		
40	옥구중	대야면 지경리 만자로 92			451-2946		
41	고등학교 (5개교8학급)	공립	군산고(2학급)	팔마로 122번지	445-4255		
42			한들고등학교	대야면 만자로 60	451-2915		
43			군산상고(2학급)	석치1길 5	468-8676		
44			군산여고	월명1길 16	440-1100		
45			군산여상(2학급)	중바우2길 33	467-6506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양식(신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제출자 명단

()학교

연번	성명	성별	학년	생년월일	선정 또는 배치	주소	연락처		재학학교 (또는 기배치학교)	배치희망 학 교 (1지망)	복지카드		장애 유형 (특수 교육법)	특수교 육운영 위원회 (○.×)
							보호자성명 (연락처)	교사성명 (연락처)			영역	등급		
1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				
2														
3														

※ 장애인등록유형란에 장애영역 명시-장애인복지법상의 15가지 장애유형 참조.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제출

※【선정·배치】란에 선정·배치 희망자 = 선정·배치, 배치 희망자 = 배치로 기재

※배치희망학교는 일반학급인지 아니면 특수학급인지를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람.

※【특수교육운영위원회】란은 각학교에서 작성하지 않음.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없을 경우 생략)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병의원 발행 장애진단서(임상심리평가결과보고서) 제출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성명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6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를 위해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를 교육적 조치를 위해 공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목 적 : 교육적 대책을 수립하고자함
2. 공개범위 : 진단·평가를 받은 학생이 취학 하고 있는 기관에 근무한 특수교사 및 담임교사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서명)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3.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양식(기존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1>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제출자 명단

()학교

연번	성명	성별	학년	생년월일	재배치	주소	연락처		재학학교 (또는 기배치학교)	배치희망 학교 (1지망)	복지카드		장애 유형 (특수 교육법)	특수교 육운영 위원회 선정 (○.×)
							보호자성명 (연락처)	교사성명 (연락처)			영역	등급		
1					재 배 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				

※장애인등록(복지카드)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유형만 명시(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10가지 장애영역으로 표시)-장애인복지법상의 15가지 장애유형과 참조.

※【재배치】란에 재배치로 기재.

※배치희망학교는 일반학급인지 아니면 특수학급인지를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람.

※【특수교육운영위원회】란은 각학교에서 작성하지 않음.

※배치결과통지서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없을 경우 생략)

<재배치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대상자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장애유형			기선정.배치일		기배치 구분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주소								
		소속학교	학교 학년 반 (재학, 졸업예정)							
	보호자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희망 학교명		1희망	()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					
		2희망	()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					
		3희망	()학교		일반학급(), 특수학급()					
배치 변경 신청 사유		※ 학부모가 직접 기록하되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담임교사가 작성할 경우 학부모에게 정확한 확인을 거쳐 작성해 주세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1조 3항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담임교사 : (인)		
								보호자 : (인)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재배치3>

수 신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경 유
제 목 :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1. 관련 : ○○○○학교-○○○(2018.○○.○○)
2.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배치 신청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제출자 명단 1부
 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1부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4.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만 제출) 사본 1부
 5. 주민등록등본(거주지 이전 확인이 필요 할 경우 제출) 1부. 끝.

※ 관련 문서 번호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 내부 결재 번호를 의미함

<재배치4>(재배치 결과통지서 수령 이후 작성 보고)

수 신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경 유
 제 목 :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수 변동 사항 보고

1. 관련: ○○학교 - ○○○(2018.○○.○○)
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변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동 사유
	일반학급 배치		특수학급 배치		합계	일반학급 배치		특수학급 배치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학생 수											

끝.

※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내용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람.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환급) 신청서 양식

<선정취소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환급) 신청자 명단

()학교

연번	성명	성별	학년반	생년월일	취소	주소	연락처		재학 학교	취소신청사유
							보호자성명 (연락처)	교사성명 (연락처)		
1					취소					

※배치결과통지서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록(학교별 협의록 양식)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

5. 특수교육대상자 유예 또는 면제 신청서 양식

<유예면제1>

의무교육 유예 또는 면제 신청자 명단

()학교

연번	성명	성별	학년 반	생년월일	유예 또는 면제	주소	연락처		재학학교 (또는 기배치학교)	유예 또는 면제 신청사유	장애인 등록유형		장애 유형 (특수 교육법)
							보호자성명 (연락처)	교사성명 (연락처)			영역	등급	

※장애인등록(복지카드)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유형만 명시(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10가지 장애영역으로 표시)-장애인복지법상의 15가지 장애유형과 참조

※【유예 또는 면제】란에 신청 내용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로 기재.

※배치결과통지서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없을 경우 생략)

<유예면제2>

취학유예 및 면제 승인 신청서

특수교육 대 상 자	주소			
	성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보 호 자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유 예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 또는 유예사유	<p style="color: red; margin: 0;">*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등 장애가 있더라도 또래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p> <p style="color: red; margin: 0;">* 기타 유예 타당성 입증서류는 첨부</p>			

붙임 : 증빙서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취학의 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1항 규정에 의거 의무교육의 유예(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인)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6. 건강장애 선정배치 신청서 양식

<건강장애1>

건강장애 선정배치(재심의) 신청 제출자 명단

()학교

연번	성명	성별	학년	생년월일	선정 또는 배치 (재심의)	주소	연락처		재학학교	배치희망 학교	복지카드		장애 유형 (특수 교육법)	특수교 육운영 위원회 (○×)
							보호자성명 (연락처)	교사성명 (연락처)			영역	등급		
1					선정 배치					○○학교 일반학급			건강 장애	

※건강장애학생은 일반학급 배치가 원칙

※【선정 또는 배치(재심의)】란에 신청 내용에 따라 선정배치 또는 재심으로 기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란은 각학교에서 작성하지 않음.

※3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1부 첨부하여 제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없으면 제출 생략)

※재심의일 경우, 배치결과통지서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

※재심의일 경우, 해당학교 출석부(학기초 또는 선정일~현재) 사본 1부 첨부하여 제출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건강장애2>건강장애 신규 선정일 경우 제출(재심의 제출 생략)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									
※ 본 조사는 장애인등에 특수교육법에 의거한 진단.평가 기초자료 외에 사용하지 않음									
아동(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작성자 부모		작성자 교사		부모 전화번호					
※ 해당란에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간단하게 적거나 ○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작성	구분	내용							
	발육및 건강상태								
	과거 병원진료 경험	(*수술 및 입원 경험기술)					장애등록	예 / 아니오	
	시각적 문제	있음 / 없음	청각적 문제	있음 / 없음	신체적 문제	있음 / 없음			
	대소변 처리	식사 태도		옷 입고 벗기		사회성(대인관계)			
	전혀 못함 ()	혼자 못함 ()	전혀 못함 ()	혼자 지냄 ()					
	의사표현함 ()	식사도구사용 ()	고무줄 바지 사용함 ()	친구와 어울림 ()					
	소변처리함 ()	미숙함 ()	단추, 지퍼 등 사용함 ()	협동놀이 가능함 ()					
	대변처리함 ()	흘리고 먹음 ()	상의입고 벗을 수 있음 ()	대화 가능함 ()					
	도와주면 가능 ()	혼자 식사함 ()	양말 신고 벗을 수 있음 ()						
	식사 후 뒷 정리함 ()	운동화 신고 벗을 수 있음 ()							
	편식함 ()								
담임교사 작성	인지	읽기	전혀못함 ()	전혀못함 ()	전혀못함 ()	음악	전혀못함 ()		
			따라읽기 ()	수 읽 기 ()	엄마,아빠 ()		울동모방 ()		
	학습 및	쓰기	보고읽기 ()	수 세 기 ()	간단한 단어로	미술	가사전달 ()		
			전혀못함 ()	한자리수 덧셈.뺄셈 ()	의사소통 ()		전혀못함 ()		
			뺄어쓰기 ()	두자리수이상 덧셈.뺄셈 ()	문장으로 말하기 ()		낙서하기 ()		
			보고쓰기 ()	곱 셈 ()	언어적 지시 ()		밀그림색칠하기 ()		
	받아쓰기 ()	나 Nunes ()	이해함 ()		형태그리기 ()				
	생활 적응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미흡함	아주 미흡함	
		문제 해결							
		정서 표현							
질서 의식									
사회성기술									
수업 참여									
학습 준비									
정리 정돈									
행동 및 성격 특성									
학부모 의견									
담임교사 의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건강장애3>

(2018)학년도 건강장애 선정·배치(재심의) 신청서

접수번호	2018 (유,초,중)-()		
소 속	()학교 제 학년 반	성명	
현 주소			
희망지	희망 학교명	희망학급	
1희망		일반학급	
2희망		일반학급	
3희망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유형	주 영역	건강장애	
	중복여부	()장애+()장애	
장애 유형	건강장애		
학부모 의견	<p style="color: red; font-size: small;">※ 학부모가 직접 기록하되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안내하고, 담임교사가 작성할 경우 학부모의 정확한 확인을 거쳐 작성해 주세요.</p>		
위 희망 학교에 배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보호자 (인) </div>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학교장 (직인) 성명 (사인) </div>			

- ※접수번호: 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군교육장(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9. 개별화교육지원팀 조직 및 운영

군 산 ○ ○ 학 교 (예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학년도 개별화교육지원팀 조직 및 운영

1. 관련 : 교육지원과- (2018.)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본교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 구성의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육 관련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개별화교육지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나. 법적 근거:

내용	법 조 항	세 부 내 용
조 직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22조1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구 성	시행규칙 제4조 1항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년의 시작일 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 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4조 3항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조 직



라. 임 무

- 1)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2) 특수교육대상 지원의뢰 및 선정취소, 배치변경에 대한 협의
- 3)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통합학급 배치에 관한 문제 협의. 끝

★	교사(중등)	교감(중등)	교장(중등)
협조자			
시행	()	()	()
우	전라북도		
전화	/전송	/	/ 공개

10. 특수학급 미설치교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2018학년도 ()학기 개별화교육계획

1.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및 개별화교육시작 및 종결 시기

이름		개별화교육지원팀	() 학기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팀장(교감)	
학년반	학년 반	팀원(보호자)	
장애유형(등급)		팀원(진로담당)	
선정배치번호		팀원(일반교사)	
주소		팀원(특수업무)	
		팀원(관련서비스)	
교육활동 방법	<input type="checkbox"/> 시간제특수학급 <input type="checkbox"/> 전일제 특수학급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일제통합학급(완전통합)		
()학기 개별화교육 시작 및 종결시기	() 학기	2018. . . ~ 2018. . .	

2.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 학기
치료 지원	
방과후활동 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3. 현재 학습 수행 수준

현재학습 수행수준	내 용

4.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영역	() 학기
교육 목표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으로서 전 교육과정활동에 교육목표·내용·방법 및 평가계획의 수정 없이 적용하여 참여하고 반영함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11. 특수학급 설치교 개별화교육계획 양식

2018학년도

[] 학 기 개 별 화 교 육 계 획



학교명	학 생 명	학 년 반	작 성 일	특수교사

위 학생의 2018학년도 ()학기 개별화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개별화지원팀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교감		
개별화교육위원	교무		
개별화교육위원	특수교사		
개별화교육위원	통합학급교사		
개별화교육위원	보호자		

군 산 ○ ○ 학 교

1. 학생실태 및 인적사항

성명		학년반		번호		주민번호	
성별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주 소						연락처	
가족 사항	부	모	형	제	자	매	통학상황 도보 버스 자가용
병력 및 복용약물	無						
통합학급 교육과정	교과	주당시간	교육적 지원		교과	주당 시간	교육적 지원
	국어		통합학급수업참여		사회		통합학급수업참여
	영어				음악		
	수학				미술		
	과학				체육		
	창 체				실과		
수행 수준	개인위생						
	국어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수학	수				도형	
		연산				측정	
	적응행동						
급우관계							
학부모 요구중점	교과학습						
	생활습관						
특수교육 지원 여부	방과후				통학비		
	보조원				치료지원		
평가 계획	평가지기	평 가 일	평 가 방 법			평가자	
	1차	2018.7.20	포트폴리오/학력 평가			특수교사	
	2차	2018.12.20	포트폴리오/학력 평가			특수교사	
심리. 진단 검사	영 역	도 구 명	검 사 일	검 사 결 과			
	지능	지능검사					
	사회성	적응행동검사					

2. 개별화교육계획

연간 및 학기별 목표							
과목명		국어 : 말하기 / 듣기			대상학생	작성일	
현재 학습수행 수준							
말하기:				듣기: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평가결과	
2학기 목표	월별 목표		교수.학습 방법	교수자료			
말하기	-이야기를 듣고 주요사건과 인물을 말할 수 있다	4	-이야기를 듣고 내용 파악하기	-이야기의 주인공 말하기 -이야기의 사건 말하기	-직접교수	-그림자료 -학습지	-관찰법 -지필법
		5	-이야기를 듣고 내용 파악하기	-이야기의 주인공 말하기 -이야기의 사건 말하기			
		6	-이야기를 듣고 내용 파악하기	-이야기 듣고 느낌 말하기 -이야기 듣고 자기생각 말하기			
		7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내용 말해보기	-이야기 듣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보기			
듣기	-이야기에 집중하여 듣고 주요사건을 말할 수 있다	4	-이야기를 듣고 중심 사건 이해하기	-이야기 주의깊게 듣기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말 찾기	-자기교수	-그림책 -노래자료	-구술법 -학기말 평가
		5	-이야기를 듣고 중심 사건 이해하기	-이야기에서 흉내내는 말 찾기			
		6	-이야기를 듣고 중심 사건 이해하기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질문하기			
		7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내용 말해보기	-이야기 듣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보기			

연간 및 학기별 목표							
과목명		수학 : 수와 연산 / 도형				대상학생	작성일
현재 학습수행 수준							
수와 연산 : / 도형: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평가결과	
2학기 목표	월별 목표		교수 . 학습방법	교수자료			
수 와 연 산	-십의 자리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일의 자리의 가감 계산을 할 수 있다	9	-한자리수 대소 비교 -한자리수 뺄셈	-하나 더 많은 것/적은 것 알기 -1~9 두 수의 크기 비교 -구체물이용 한자리수 뺄셈	-직접교수	-구체물	-관찰법 -지필법 -학기말 평가
		10	-두자리수 익히기 -두자리 수의 순서 알기 -두자리수 크기 비교 -한자리수 뺄셈	-10~19 순서 익히기 -10~19 두 수의 크기 비교 -구체물이용 한자리수 뺄셈	-문제해결전략 -원리발견학습	-수계열판 -수카드	
		11	-한자리수의 덧셈과 뺄셈	-한자리수의 덧셈 -한자리수의 뺄셈	-자기교수	-학습지	
		12	-받아올림 있는 한자리수 덧셈 -한자리수 뺄셈	-받아올림있는 한자리수의 덧셈 -한자리수의 뺄셈			
도 형	-다양한 도형을 알고 스스로 그릴 수 있다	9	-도형 그리기	-원,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 그리기	-직접교수 -원리발견학습	-입체도형모형 -자 -삼각자 -색종이 -스케치북	-관찰법 -지필법 -학기말 평가
		10	-삼각형, 사각형 알기	-꼭지점, 변과 그 개수 알기			
		11	-다각형 알기	-꼭지점, 변과 그 개수 알기			
		12	-도형 움직이기	-회전에 따른 도형 변화 알기			

3. 학기말평가

학 인	개별화교육지원팀			
	위원	위원	위원	위원장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기 교과학습 및 행동발달 평가
군산○○학교 학년 반 이름 : 홍○○

과목	영역	발달 상황
국어	듣기	. 짧은 이야기를 듣고, 등장인물과 사건의 흐름을 알 수 있다. . 만화영화를 보고 등장인물의 특성, 사건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말하기	. 생각이 드러나게 조리있게 말할 수 있다. .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말할 수 있다.
	읽기	. 짧은 문단을 읽고 일의 순서와 읽고난 느낌을 말할 수 있다. . 문장을 읽을 때 주의깊게 읽지않고 한음절씩 누락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다.
	쓰기	. 설명하는 문장을 쓸 수 있으나 띄어쓰기를 잘 알지 못한다. . 일의 순서나 방법을 짧은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 겹받침을 알고 쓸 수 있다.
수학	수와 연산	. 한자리 수끼리의 덧셈을 암산으로 할 수 있다. . 반구체물을 이용한 한자리수 뺄셈 계산을 할 수 있다.
	도형	. 다각형(삼각형,사각형,육각형) 및 원을 구별하고 스스로 그릴 수 있다.
	측정	. 길이, 크기, 높이, 무게, 양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 . 바늘시계를 보고 30분 단위, 정각단위로 시계를 읽을 수 있다. . 요일의 이름과 순서를 알고 있다.
기타		
행동 발달		. 학습수준이 학년에 비해 낮으나 꾸준히 노력하며 발전하고 있음. . 때때로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서 교사의 지도에 자존심 상해할 때 있음. 이런 경우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에 흥미를 잃는 행동특성을 보임. . 교우관계나 이성에 대한 관심이 또래와 같은 수준이며 이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

12. 특수교육지도사 업무 일지 양식

특수교육지도사 업무일지

				특수교육 지도사	담당교사	교감
년 월 일 요일						
구분	지원대상	활동장소	활동내용 및 방법	특기사항		
수업이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시간						
5교시						
6교시						
수업이후						
협의 및 전달사항						
기타 기록사항						

13. 특수교육지도사 활용 계획 양식

특수교육지도사 활용 계획(예시)

통합학급 담임 : (인)

특수학급 담당교사 : (인)

1. 특수교육지도사의 배치 및 주요 업무

가.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학생

순	특수교육지도사명	대 상 학 생	주요지원대상 학생	소 속
1				

나.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및 보조사항

-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 학습준비 및 이동보조, 학습활동 보조, 학습자료제작 지원
-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인육구 지원
 - 용변 및 식사지도,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

2. 일과 시간별 활용계획

구분	지원 대상 (성명,학년반)	주요활동	활동 내용과 방법	활동장소
수업 이전		학습준비지원	학습준비 파악 및 미비한 준비 지원, 아침자습활동 보조	통합학급
오전 수업		수업보조	교과에의 참여 유도, 바른자세를 위한 언어적 촉구 제공, 모델링 제공, 주의집중 지도, 또래관계형성 지원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점심 시간		급식지도, 또래활동지원	올바른 급식 태도 및 용변처리 지도, 비장애 아동과의 의사소통 및 또래놀이 활동 참여 유도	급식실 및 통합학급
오후 수업		수업보조	교과활동 지원 및 피드백, 이동보조, 문제행동관리, 교수자료 제시 및 피드백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수업 이후		방과후활동 보조, 자료정리 및 준비, 협의 및 반성	방과후활동 보조, 학생보조일지 작성, 교수.학습자료 준비 제작, 지도방법 협의 및 평가	특수학급 및 방과후교실

3. 지원영역별 활용계획

구분	지원 대상 (성명, 학년반)	주요활동	활동 내용과 방법	활동장소
교과 학습		교과활동지원	수업내용 및 자료 수정 보조, 학습자료 제작 보조, 학습활동 피드백 및 모델링, 학습참여 유도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문제 행동		문제행동수정	자리착석, 유의미한 의사표현법 지도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자리착석, 혼잣말 소거를 위한 행동 수정	
			규칙 지키기를 위한 자기점검, 자리이탈 소리지르기 소거를 위한 행동수정	
			숨기, 자리이탈 등에 대한 점검	
			반향어 소거를 위한 행동수정, 규칙 지키기를 위한 자기점검	
			공격적 행동과 욕설하는 습관 소거를 위한 행동수정	
	차례지키기 등 참을성 형성을 위한 자기점검			
사 회 성		적응행동, 또래관계형성, 자 기효능감 향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조기술 지도, 상황에 맞는 태도 형성, 의사소통 매개자 역할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의사표현기술, 자기결정기술, 또래관계 기술 지원	
			자신감 향상을 위한 자기효능감 향상훈련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유도, 자기효능감 향상훈련	

14. 치료지원대상자 및 순회치료지원 신청서 양식

치료지원대상자 및 순회치료 대상자 희망 신청서

학교명 : (직인)

작성자 직위 : 성명 : (인)

순	이름 (학년반)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행동특성	장애영역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								순회치료 신청 (해당자만 작성)		보호자 서명		
				학부모	교사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 카드(급)	치료지원 영역								순회치료 신청(○,×)			치료 활동 장소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언어 (청능) 치료	보행 치료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심리 운동	감각 통합	언어 치료	미술 치료			

- ※ 치료지원비 신청 및 순회치료를 원하는 경우 치료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선정받고자 하는 치료지원영역에 표시)을 하여 해당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받아야 하며, 순회치료를 신청하는 학생은 순회치료 신청에도 표시(순회치료는 1학기에만 신청 가능)
- ※ 치료지원 영역 중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치료, 보행치료는 의사진단서 첨부(언어치료 선정 신청 시 의사진단서가 없는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치료사가 진단평가 실시)
- ※ 유관기관을 이용한 치료지원비 신청과 치료사를 활용한 순회치료는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야 함, 따라서 치료지원비 신청을 원할 경우 순회치료는 신청 안함
- ※ 순회치료 신청 시 언어 및 미술치료 중 한 가지 영역만 선택, 순회치료 신청을 하였으나 순회치료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순회치료 신청 시 치료활동장소는 부적절한 장소는 피하시고 치료활동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확보(부적절한 장소: 숙직실, 학생이동이 많은 도서실, 학교 행사로 인해 사용유무 변경이 많은 장소 등), 순회치료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내방하여 센터 치료사의 치료지원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치료활동장소를 '센터 내방'으로 작성

군산교육지원청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15. 현장실습 관련 업무 양식

현장실습의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시간 등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으로 인정

<학칙 예시>

제 12 장 현장체험학습 및 직업현장실습

제34조(현장실습)① 학교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에 의거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 사업체 등의 의견과 여건을 고려하여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② 사업체파견 현장실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체파견 현장실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 및 학생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교내활동, 현장체험학습, 직업탐색활동, 특정직무체험학습, 사업체견학, 사업체파견 현장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실습을 운영한다.(활동유형 및 인정범위)

④ 학교 및 학생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고 다음 각 호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통합하여 수업으로 인정한다.(인정절차 및 인정시간)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교육과정활동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2. 보호자가 현장실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현장실습. 단, 현장실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현장실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호자가 사업체파견 현장실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사업체파견 현장실습.

⑤ 제4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하‘사업체파견현장실습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사업체파견현장실습운영규정’에 필요한 내용

1. 사업체 출근상황(지각, 지참, 조퇴, 병결 등)
2. 현장실습 과제 수행에 대한 태도
3. 담당교사의 방문관찰 결과, 사업체 평가결과
4. 계약기간 만료 전 복귀
5. 계약관련 서류 등

<내부결재 예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 ○ 고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1. 관련: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1000-696(2018.03.03)
 2. 2018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교학생의 인턴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목적	직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장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돕기 위해 학습의 장을 취업과 연관된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실습을 통한 실제적인 경험을 얻게 하고 졸업 후 사회로의 전환을 돕는다.
프로그램	장애학생 지원사업
참가학생	3학년 9반 24번 ○○○
실습장소	000 요양병원
실습업무	환자 수송 지원 및 병실청소
실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8.12. ~ 2018.08.20. ■ 월요일~금요일(주5일), 13:30~17:30(1일 4시간)
출퇴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의 지원을 받아 실습장까지 개별 통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석 및 수업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및 수업으로 인정(관련: 00고등학교 학칙 00조) - 현장실습 참여 시 이수시간은 통합학급 시간표의 시간으로 대체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시수로 인정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프로그램은 전주교육지원청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한다. ■ 현장실습에 관련된 안전지도 및 사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한다. ■ 수습기간동안 직무지도원이 학생의 실습지도를 보조한다.

- 붙임 1. 직장체험 및 인턴십 동의서 (○○○)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끝.

<직장체험 및 인턴십 동의서 양식 예시>

현장실습 파견 동의 및 서약서

소속	고등학교	학년 · 반	3학년 9반	성명	
실 습 산업체명	0000 (00시 00점)			전화	
소재지					

위 본인과 보호자 _____는(은) 현장실습 파견에 동의하며, 현장실습 중인 학생으로서 교칙을 준수하고 아래 각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선도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2. 현장실습 기간 중 소속 회사의 사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3. 현장실습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는 물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지 않겠습니다. (무 단퇴사 및 무단이탈 : 학생선도 규정에 의거 처벌함.)
4. 현장실습 기간 중 출 · 퇴근 및 기타 이동 시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인과 보호자가 책임지겠습니다.
5. 현장실습 기간 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및 산업체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호자가 책임지겠습니다.
6. 현장실습 통보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실습에 불응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보호자
현주소 <u>군산시 00000동 199-1</u>	현주소 <u>군산시 00000 3동 199-17</u>
성 명 _____(인)	관 계 _____
	성 명 _____(인)

2018. . .

○○ 고 등 학 교 장 귀 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I.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9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현장실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직무능력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적 체험을 의미한다.
 - 나. "교내 체험형 현장실습"이란 학교 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 다. "교내 일자리 참여형 현장실습"이란 복지일자리, 희망드림 직업실습 등 학교 내에서 급여를 받으며 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 라. "교외 체험형 현장실습"이란 교외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 마. "교외 일자리 참여형"이란 교외업체에서 급여를 받으면 하는 현장실습을 말한다.
3. (방법) 현장실습은 교내형(체험형, 일자리참여형), 현장형(체험형, 일자리 참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간제, 전일제, 방학 중 인턴십, 학기 집중이수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4.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학교는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 내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7인 이내의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실습 기관 선정 심의, 학생지도 및 현장실습 기관 점검 등 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II. 현장실습 운영 계획

5. (현장실습 운영 계획)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 ① 학교는 매 학년도 초에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② 학교는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기관 담당자와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6.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는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이 전학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①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학습장에서 행하는 학습을 이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② 현장실습의 이수 단위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 등과 협의를 거쳐 적정한 이수단위를 결정하도록 한다.
- ③ 부득이하게 보통교과가 편성된 상황에서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해당 교과의 이수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적정한 방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현장실습의 운영

- 7. (현장실습 실시)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현장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외부형 현장실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내형 현장실습으로 실시할 수 있다.
- 8. (현장실습 운영 시기) 현장실습은 학교의 특성과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급)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① 직무 체험, 전일제, 단기집중 현장실습의 경우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포함하여 수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② 일자리 참여형 현장실습의 경우는 학교에서 관련 지식과 실무 등을 배운 후 고등학교의 경우 3학년 2학기에, 전공과의 경우 1학년 1학기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청 승인을 받도록 한다.
- 9. 학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현장실습 운영과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가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선정한다.
 - ① 학교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산업체를 방문하여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산업체의 역량 등 교육적 측면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이 가능한지 판단하여 현장실습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현장실습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근로기준 준수, 현장실무교육,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방문한 사업체가 ‘현장실습 제한 기준(노동관계법 위반 전력)’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심의한다.
- 10. (현장실습 협약) 학교는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① (협약) 일자리 참여형 현장실습의 경우 학교장, 학생 및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실시 7일 이전에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근로계약) 현장실습 협약 시 현장실습 기관의 장과 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학생의 안전과 근로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실습 기관의 장은 근로계약 결과를 학교에 알려야 한다.
 - ③ (지원) 학교는 현장실습 협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학생 보호자에 정보 제공) 학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V. 현장실습 학생 지도 및 감독

11. 교육청은 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행.재정 사항을 지원하고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보호 등을 위한 학생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사전 교육) 학교는 학생이 현장실습 실시하기 전에 기관 소개, 산업안전보건, 근로관계법, 직업윤리의식, 학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 ② (현장방문지도) 학교는 현장실습 산업체를 방문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이수 태도, 학생 건강, 현장실습 협약의 준수, 산업체의 산업안전보건의 예방과 근로환경, 근로기준 준수 등을 지도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 ③ (지도 결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습계획이나 협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실습 기관과 협의하여 실습내용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학생 보호) 교원과 학생은 현장실습 기관이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에 의한 근로기준 위반과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에 상담 및 신고를 하여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 ⑤ (현장실습 기관 지원) 학교는 실습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 지도를 위해 현장실습 기관 담당자를 (가칭) '산학협력 교사' 등으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2.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등과 협력하여 학교별 현장실습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기준 준수 등의 지도감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기준 준수 대책에 활용하여야 한다.
13. 학교는 현장 일자리 참여형 현장실습 복귀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① 현장 일자리 참여형 현장실습 중, 학교로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은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학교는 복귀 학생의 상담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V. 현장실습의 평가

14.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과 학교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① (학생 평가) 학교는 현장실습 활동에 대해 학교 또는 현장실습 기관, 학교와 현장실습 기관이 공동으로 평가를 하도록 한다.

- ② (교외형 현장실습의 평가) 현장실습의 출석, 태도, 일지, 현장실습 기관 담당자의 평가, 학교별 자체 양식에 의한 현장실습 결과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③ (학교 자체 평가) 학교는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결과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④ (교육청의 결과 보고) 교육청은 학교가 제출하는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청 차원의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교육청과 일자리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다.
- ⑤ 교육청은 학교에서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차년도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 이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법률 제10776호, 2011.06.07.)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7호, 2013.03.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82호, 2013.03.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3호, 2013.03.2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호, 2013.03.23.) 및 학교 교육과정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